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손 현 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3-11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손 현 진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for a Better Legislation on
Digital Public Information to Invigorate
the Economy and Society.

연구자 : 손현진(부연구위원)

Son, Hyun Jin

2013.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에서 취급되는 공공정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생성되므로 민간의 영리 목적의 정보에 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임.
- 특히, 인터넷 통신망의 성장과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로 발전된 디지털 공공정보는 효과적인 유통 여부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창고라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도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공공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각종 사업 기회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개방이 경제사회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의 중요성과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방안을 살펴보는 것임.

II. 주요 내용

□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국가의 공공정보는 전산화가 발전됨에 따라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자원을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자원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상업적 활용이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려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상업적 활용이란 비영리목적으로 단순 열람, 학술 및 기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의 공공정책 및 공공정보가 개방·공유, 활용이라는 가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산업진흥 및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공공정보 유통에 대한 근거 및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의 부재로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안은 현재 총 24개 이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부처법이나 공공정보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공공정보제공지침」은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분야별 공공정보 제공 법률과 상충되어 행정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제공대상·절차·비용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미흡
-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기상관련 분야에 있어서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보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별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하여 민간이 원하는 DB 종류, 제공 형태 등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내지 행정권의 감시 차원에서 행해진 정보공개 정책이나 정보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화정책을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와 민간의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교통분야에 있어서 교통시설 및 운행정보 연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정보 통합제공 등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DB 확대·개방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적 문화디자인 DB 개방 및 민간협업을 통한 산업적 활용으로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증대가치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정보를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되도록 개선함.
- 정부는 스마트 정부(정부 3.0) 시책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유도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공공정보 DB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이용가치가 높은 중요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공공정보 개방·활용촉진,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국가지식 인프라 확충에 기여함.
 -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정보의 유통 시스템을 확립하여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내 공공정보 관련 법·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화 및 입법모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기관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경제사회, 디지털 공공정보, 공공데이터, 공공정보 활성화, 스마트정부, 정부3.0,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Public information is usually used as reference for the government to set up a policy or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which is more objective and neutral than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which usually pursues profits.
- In particular, digital public information formed by the growth of a broadband and digitalization is the key to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creates huge social values if its distribution is made effectively.
-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a way to grow the use of digital public information by the private sector in the Smart era, suggesting a variety of legislative and political plans.
- Making the best use of public information can create more business opportunities and jobs, which is an important task to realize that can grow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 This study looks at the influence of the open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on the economy and society and legislative and political measures to invigorate the economy through commercializing public information.

II. Key Contents

- Open Access to Digital Public Information to Invigorate the Economy and Society
- Public information means a record or material of all forms of media originating from the work of field of the public sector. Disclosing of public information means such information is allowed to be accessed or a copy of such information is allowed to be distributed or provided through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by an institution in the public sector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 Article 2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the term of “information” as ‘matters recorded in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drawings, pictures, films, tapes, slides, and other media corresponding thereto that are made, acquir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discharge their duties.’
-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ization, new paradigm has been being in place where diverse information are linked and consolidated to provide the quality service of providing the public with official information.

- The government links information systems and encourages to share information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for the public and the efficiency of using information resources.
-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means that the official information originating from the public sector can be used by individual or the private sector for the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
- Commercial use means that government information is used for making economic profits and non-commercial use means that such information is used for simple browsing, academic or other non-profitable purpose.

Legislative Issues in regard of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start making public access to official information of their government easier for industrial growth and value creation amid the words like disclosure, sharing and utilization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have become key words.
- Meanwhile, Korea is lack of provisions on distribution of public information and a standardized procedure of distribution, which is in other words a sign of the lack of willingness to provide public information. Distribution of public information often

delays due to a lack of clear standard and procedure on its disclosure and use.

- There are 24 laws related to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Providing official information needs to entirely depend on laws for individual departments or parts of other related laws.
- There is 'Guideline on Public Information' in place. However, the guideline contradicts the existing laws on the access to official information, which causes confusion. Specific provisions on procedure, cost and so on are lacked as well.
- A standard on the use of public information by the private sector and a comprehensive guideline for the use of official information should be defined and regulated in a form of a general law or framework act.

Proposal to Improve Legislations on Public Information

-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official information in a climate-related area, high quality climate data should be mor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the distribution system is needed to be improved. Legislative enhancemen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upgraded climate service that is linked to data on not only climate but also disasters, medical area and energy.
-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official information in a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 intensive study and analysis

on demand, the type of database and the method to provide such service that are in need by the public and consistent extension of the access.

- A fundamental change in a policy for disclosing public inform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 and promote the economy as well as promoting the right to know and reinforcing monitoring by the administrative power.
-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official information in a transportation area, the extension and open access to the transportation database is required so that the public can use transportation-related data more conveniently through a consolidated database 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rivers' informati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etc.
-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official information in a science and technology area,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lan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other intellectual values so that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data, especially data related to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can be smoothly managed and disseminated.
-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official information in a culture and tourism area, Korean cultural design database should b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used for the economic purpose. It

will help to improve the productivities of a business and to increase profits. Consolidation of cultural tourism data with IT, education, culture, welfare, medical service and other industries would boost the creative economy.

- The government commenced the policy of Smart Government (Government 3.0) and strives to establish a growth engine for executing national tasks by promoting the open access to offici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 The open access to and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would create more jobs. To this end, a tailored service for the public would be provided.
- With the project for digital public information database, the government digitalises highly import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are worth to conserve or use and promotes the open access and use of such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ublic service and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 Thus, a distribution system of public information must be established so that the government, the public and the businesses can utilize them in the digital information era.

III. Expected Outcome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ublic information, which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designing a law and a legislative model for the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 This study considers diverse opinions of experts and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related to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in the public institutions, which can be used as reference when a policy is implemented.

➤ **Key Words** : Economic and social, digital public 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official information, use of public information, the Smart government, government 3.0, Electronic Government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ct on providing public data and promoting its us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제 1 절 연구의 목적	2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 2 장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27
제 1 절 디지털 공공정보 개념 및 분류	27
1. 디지털 공공정보의 개념	27
2. 디지털 공공정보의 특징 및 연혁	36
제 2 절 디지털 공공정보의 활용	40
1. 디지털 공공정보 활용가치	40
2. 디지털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42
제 3 장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49
제 1 절 개 요	49
제 2 절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 현황	50
1. 개 요	50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53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1
4. 전자정부법	65
5. 국가정보화기본법	70
제 3 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현황	74
1.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별 법제 현황	75
2.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78
제 4 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해외사례	85
1. 개 요	85
2. 미국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	87
3. 영국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	98
4. EU 공공정보 활성화 현황	106
5. 일본의 공공정보 활성화 현황	111
제 5 절 문제점	116
1. 공공정보 민간개방 법제도의 한계	117
2.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추진체제 필요	118
3.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취약	119
4. 민간의 공공데이터 통합 접근창구 취약	120
5.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기반 부족	121
제 4 장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25
제 1 절 우리나라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125
1. 기상관련 분야 관련 법률	125
2. 정보산업분야 관련 법률	131
3. 교통분야	138

4. 과학기술분야	142
5. 문화관광분야	144
제 2 절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145
1. 공공정보 관련 법률 확대	145
2. 관련 법제도 개선	146
3. 정부 3.0(스마트정부)	147
제 5 장 결 론	157
참 고 문 헌	159

【부 록】

◎ 공공정보 OpenAPI 추가개방(22종)	167
◎ 2013 공공정보 개방 목록(총1,698종)	169

제 1 장 연구 목적 및 방법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인구, 경제, 지리, 기상 데이터부터 역사적 문서와 기록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일상적 업무를 통해 많은 양의 새로운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는 주로 내부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때때로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왔다.¹⁾

공공기관에서 취급되는 정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생성되므로 민간의 영리 목적의 정보에 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정보 수집 및 생산으로 질적·양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의 발전과 기술 혁신은 공공정보의 보급 및 발전의 새로운 기회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는 경제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 통신망의 성장과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로 발전된 디지털 공공정보는 효과적인 유통 여부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창고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²⁾

이러한 인식 하에서 공공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확충된 콘텐츠와 서비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콘텐츠

1)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 공을 꿈꾼다.」, 국회의원 진영, 김을동 의원실 발행, 2012.10, 4면.
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1, 1면.

및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적극 실행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³⁾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따라 상당량의 공공정보가 디지털화 되었으며, 디지털 공공정보의 관리, 전송 및 교환 등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공공정보가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융합되었을 때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듭 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디지털 정보 상품과 무선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요한 원천 자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⁴⁾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유럽이 수년 전부터 공공정보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9년 5월 공공정보 개방 정책을 발표하고 ‘data.gov’를 통해 공공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있다.

영국은 총리 자문기구인 『데이터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했다. EU는 2013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데이터 개방 전략을 세웠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One, 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⁶⁾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선진화 추진과 국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를

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1, 1면.

4) 『공공정보가 디지털 경제를 움직인다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7.1, p.14.

5) EU집행위원회는 2011년 EU 기구와 27개국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를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연간 1,400억 유로(약 210조원)로 추정·발표한 바 있다.(안정행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6, 참조)

6)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3.8, 96면).

위하여 분기별 정기공시, 공공기관의 수시지정 등 보다 능동적으로 공시자료를 현행화하며 공개해 나가고 있다.⁷⁾

우리 정부도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012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해서 오는 2015년까지 5,000개를 만드는 방안을 발표하였다.⁸⁾ 또한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법령 개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마련하게 이르렀다. 이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삶의 질 향상 등의 행정적 가치나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게 되었다.⁹⁾

이러한 공공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각종 사업 기회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공공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¹⁰⁾

최근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이를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¹¹⁾

7)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2012 국가정보화백서』, (2012.8.31.), p. 160.

8) 행정안전부는 201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공공정보 개방 2013」 선포식을 가진 자리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정보 개방의향 조사결과 새롭게 발굴된 1,698종의 개방 목록을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 및 앱센터 운동본부 등 민·관이 합동으로 공공정보 개방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정보 개방 2013” 선포식 참고자료, 2012.12)

9) 한국행정연구원,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2011-16, 206면.

1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1, 3면.

11) 2013.6.19.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창조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산업화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개방이 경제사회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의 중요성과 공공정보 상용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국내 공공정보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법제화 및 입법모형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디지털 공공정보의 개념과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본 연구보고서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에서는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에 대한 개념 및 분류, 디지털 공공정보의 활용가치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공공정보의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내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등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제현황과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명화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 요구가 있기 전에 먼저 공개하겠다는 것이며, 2012년도 31만 건인 정보 고개 건수를 2013년도부터 연간 1억 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방안 및 5장에서 결론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공정보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정책에 관한 국내 및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기초로 현행 법·제도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방법론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정보와 관련된 현행 국내 법령의 분석,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제도 도입과 관련된 배경 등을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정보 관련 기관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본 연구보고서가 공공정보 관련 법제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실문적인 면도 강조하였다.

제 2 장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제 1 절 디지털 공공정보 개념 및 분류

1. 디지털 공공정보의 개념

디지털 공공정보의 개념에 앞서 전통적인 공공정보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정보의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공공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 정의는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정보, 지식정보자원, 공공문화콘텐츠, 공공기록물, 국가정보자료 등의 유사한 의미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¹²⁾

공공정보란 ‘공공기관’¹³⁾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¹⁴⁾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2008.12, 12면.

13) 공공기관의 범주로는 입법·사법·행정기관·기타 국립학교 등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4)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의 개념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로서 정부의 행정전산화의 확대에 그 생산량과 활용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¹⁵⁾

적용범위에 따르면 광의의 공공정보란 공익을 위한 모든 정보, 즉 공익의 측면에서 주민 또는 국민을 위한 정보로서, 공공부문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비영리조직 뿐만 아니라 사부문의 기업, 영리법인, 개인이 생성하고 보유하는 모든 공익성격의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문화정보·의료정보·안전정보·생활정보·교육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¹⁶⁾

협의의 공공정보는 정보의 생성과 소유주체가 정부인 정보로서 정부정보 또는 행정정보를 의미하며 공문서¹⁷⁾·국가간행물·정부간행물로서 백서·연감·보고서·업무자료·홍보자료·법령자료·정책자료·통계자료 등이 포함된다.¹⁸⁾

공공정보의 개념이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협의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제한할 수도 있고, 광의로 해석하여 이러한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공익정보’로 표현할 수 있다.¹⁹⁾

미국의 경우 「문서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에서 공공정보란 정보의 형식과 형태에 관계없이 정부기관이 공개·배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법안도 ‘공공정보(Public Information)’란 연방정부를 위해서 연방정부에 의해 생성·수집·처리·보급·처분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⁰⁾

15)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p.189.

16) 홍필기, 윤상오, 방민석, “공공정보자원의 상업화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정보화정책』 제14권 제3호 2007, 56면.

17) 공문서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라 하더라도 결재 전 또는 작성 중인 자료들은 정보공개법상 공공정보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자료들만이 공공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홍필기, 윤상오, 방민석, 위의 논문, 56면.

1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10면.

20) Gellman, Robert, “Foundations of U.S. Governm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Policy”

유럽의 경우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는 행정정보와 비행정정보로 나뉘며, 행정정보(Administration Information: AI)란 정부 기능과 행정업무 자체와 관련된 정보로서 법률·재판·의회·행정부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비행정정보(non-administrative information)란 행정업무 수행 중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로서 주민정보, 지리정보, 산업정보, 기상정보, 교통정보 등을 포함한다.²¹⁾

【주요 법률에서의 공공정보의 개념】

법령명	관련 규정	개념정의 구성요소
전자정부법	○ 행정정보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 보유주체 ○ 보유원인 ○ 표현방식
국가정보화기본법	○ 정보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 보유주체 ○ 보유원인 ○ 표현방식
정보공개법	○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보유주체 ○ 보유원인 ○ (보존)기록매체
기록물관리법	○ 기록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	○ 보유주체 ○ 보유원인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ccess to and Ownership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Vienna, December 7th, 2001.

21) 홍필기, 윤상오, 방민석, 위의 논문, 56면.

법령명	관련 규정	개념정의 구성요소
	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으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 박물	○ 보유형태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 2011.12, 27면)

공공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 공공정보의 개념은 협의의 공공정보인 행정정보에서 시작하여 광의의 공공정보로 설명되는 공익정보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정보를 협의의 관점에서 정의하든 아니면 광의의 관점에서 정의하든 간에 각각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유형을 나누는 분류기준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공공정보의 특성상, 그 범위와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²²⁾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하여 민간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OECD와 EU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법률 및 지침에서 민간의 재활용 대상 공공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²³⁾

OECD에서는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에 대해 공공부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생성되거나, 역동적·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상업적 이용이 용이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²⁴⁾ 다만, 공공기관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문화, 유물

22)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11.12, 27~28면.

23) 위의 글, 28면.

24) Public sector information which often has characteristics of being: dynamic and continually generated, directly generated by the public sector, associated with the functioning of the public sector(for example, meteorological data, business statistics), and readily useable in commercial application.(OECD, Public Sector Information, DSTI/ICCP/IE(2005)2/Final, p.8)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정적으로 보유하는 예술품이나 문화품 등을 의미하는 공공콘텐츠(Public Sector Contents: PSC)와는 구별하고 있다.²⁵⁾

【OECD의 공공정보와 공공콘텐츠의 구분】

구분	공공정보(PSI)	공공콘텐츠(PSC)
대표적 사례	지리, 기상 관련 데이터	문화콘텐츠(박물관, 도서관)
주요 목적	정보재이용(Re-use)	보존·활용(Availability)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를 위한 투입자산으로 인식 · 민간부문이 핵심 역할 수행 · 명확한 비즈니스 거래의 실존 · 부가가치를 통한 “원천데이터”의 변화 · 빈번한 정보 유형의 결합 · 공공기관에 의해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문화적 가치로 인식 · 민간부문의 부수 역할 수행 · 대부분 상업적 활용 제한 · 콘텐츠의 변환불가성 · 개별 콘텐츠의 보존 · 생성 보다는 기금지원과 수집에 집중

(자료: OECD, Public Sector Information, DSTI/ICCP/IE(2005)2/Final)

이에 따를 때 PSI는 엄밀히 말해 질적으로 매우 원시적인 자료나 데이터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고, PSC는 정보보다는 질적으로 상위의 개념인 지식의 표현물이나 저작물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공공정보’와 ‘공공콘텐츠’를 구분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준은 저작물성과 관계가 깊다.²⁶⁾

25) Public content which often has characteristics of being: static(i.e. it is an established record), held by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being directly generated by it(cultural archives, artistic works where third-party rights may be important),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 and nor necessarily associated with commercial uses but having other public good purpose(culture, education).(OECD, Id, p.8)

26)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29면.

학계 및 실무에서는 공공정보(PSI)라는 용어와 함께 공공저작물이라는 용어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저작물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즉,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저작물성’에 주목할 때에는 공공저작물로 정보자체의 형태에 주목하게 될 때에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공공정보’로 지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저작물, 공공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 공유저작물 등의 용어 등이 실무에서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공콘텐츠 및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의 등을 간단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⁷⁾

1) 공공저작권과 공공저작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서 공공저작권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공공정보의 저작권’,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등이 있지만, ‘공공정보’와 ‘공공저작물’이란 표현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²⁸⁾

‘공공저작권’과 달리 ‘공공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실무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²⁹⁾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에서 정의한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뜻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³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학술논문, 음악, 사진, 영상, 회화, 조각, 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저작물

27) 위의 글. 31면.

28) 위의 글, 29면.

29) ‘공공저작권’과 ‘공공저작물’의 정의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지칭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 일 뿐이다.

30)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 제2조 제2호.

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재화이며 저작권이란 이와 같은 저작물을 창작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전시, 배포 행위 또는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³¹⁾

따라서 공공저작물이란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에서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학술 논문, 음악, 사진, 영상, 회화, 조각, 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³²⁾

2) 정부저작물

정부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원래 영국에서 생성된 용어로서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에 대해 왕실저작권(Crown Copyright)으로서 “국왕 또는 국왕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수행상 제작한 저작물은 국왕이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³³⁾고 규정하여 국왕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의 최초 소유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간행물 출판국(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이하 HMSO)으로 하여금 정부정보에 대한 저작권인 왕실 저작권의 통제와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³⁴⁾

3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2011.12, 8~10면.

32)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인증 활성화 정보화전략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보고서 11-07), 2011.3, 32~33면.

33) 영국저작권법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63 Crown copyright.

(1) Where a work is made by Her majesty or by an officer or servant of the Crown in the course of his duties-

(a) the work qualifies for copyright protection notwithstanding section 153(1) (ordinary requirement as to qualific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b) Her Majesty in the first owner of any copyright in the work.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2011.12.31., 32면 재인용)

34) 김우식,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 활성화 사례 연구」, 『산업경제연구』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업무상 저작물 조항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³⁵⁾

3) 공유저작물(Public Domain)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저작물, 기타 저작권법의 특칙에 의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저작물 등을 의미한다.³⁶⁾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유저작물’이란 권리자에 의한 독점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용 가능한 지적재산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물이 모든 인류를 위한 문화적 소산으로서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배타적 권리가 제한을 받는 영역제한도 존재하게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8조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87조에서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도 위 제한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³⁷⁾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계획」을 통하여 ‘공유저작물’이라는 용어를 그 개념범주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과 공공저작물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안전행정부의 「공공정보제공지침」에서의 ‘공공정보’³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데이터’³⁹⁾의 의미와 혼

제14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1, p.71.

35) 한국정보화진흥원, 위의 글, 32면.

36)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유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연구 최종 보고서」, 2011.4, 3~4면.

37) 한국정보화진흥원, 위의 글, 33면.

38)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0-45호, 「공공정보제공지침」 제2조 제2호 ‘공공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DB등의 정보로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

재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저작물의 개념정의의 이론적 논의에 합당하게 ① 저작권법상 제7조에 서의 보호가 배제되는 저작물, ②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의 저작물, ③ 보호요건 미달의 저작물, ④ 저작물 중의 원천적인 만인공유의 요소, 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보호가 종료 또는 제한된 저작물 등으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할 것이다.⁴⁰⁾

4) 소 결

최근 개정·발효된 「콘텐츠산업진흥법」⁴¹⁾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⁴²⁾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공정보로 보고 있다. 개별 법률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포함한 개방 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마련된 법조항이기에 다소간 시각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0)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34면.

41)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42) 제22조(공공정보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정보 활용의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EU나 OECD,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공공정보는 로-데이터(raw data)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⁴³⁾ 이를 어떻게 가공·활용할 것인지는 민간 사업자의 역할로 이를 가공·활용하여 이용을 활성화 한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처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논의는 경제, 지리, 조세, 치안, 교통, 기상, 환경, 식품, 문화 등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민간이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넓은 의미에서 공공정보의 범위를 포함하여 논의할 것이다.⁴⁴⁾

한편, 공공기관 등 공공정보를 취급하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공공정보 개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이 공공정보 자율적 개방 확산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대량적 이용을 약관형태의 합의절차로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공공정보의 특징 및 연혁

최근 국가의 공공정보는 단위 업무별 전산화가 발전됨에 따라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자원을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각 기관마다 분산되어 있는 정보자원을 디지털화 하여 상호 연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한정된 국가정보 예산으로 다양한

43) EU는 유럽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미국의 경우도 만료된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등 대부분의 국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44) 한국정보화진흥원, 위의 글, 35면.

정보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사용 및 활용성, 생산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⁴⁵⁾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연계 시 기관별 중복 개발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1990년 10월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11종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추가 발굴 및 현행화를 통해 2012년 6월 기준으로 총 311종의 행정표준코드를 제정·운영 중이다.⁴⁶⁾

4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국가정보화백서』, 2012.8, 311면.

46)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연 도	내 용
1990.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
1995.3	지방행정 공통표준코드 86종 제정
1995.12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47종 추가 제정
1996~1999	지방행정 공통표준코드 보완 및 208종 확정
2000.10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code.gcc.go.kr)
2004.5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확정
2004.12	행정표준코드 일제 정비 후 211종 확정
2006.1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2007.11~12	2007 신규코드 발굴 및 코드 표준화 연구
2007.8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232종)
2007.8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2008.3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251종)
2008.7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2008.7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 폐지 포함) 개정 (총 276종)

정보화 사회를 뛰어 넘어 스마트 사회로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정보화 자원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점 및 활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지식자원 확보와 활용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선도적으로 지식자원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⁴⁷⁾

2011년 국가 DB사업은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활용 등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2011~2015년)’⁴⁸⁾을 수립하였다.

국가 DB사업 중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구축된 DB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식포털은 2001년 11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1년 현재, 1,389개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총 2,600만 건의 지식정보자원을 공개하고 있다.⁴⁹⁾

국가 DB사업은 국가적 주요 지식자원에 대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IT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IT 뉴딜 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 DB사

연 도	내 용
2008.11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총 291종)
2009.7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및 9종 개정(총292종)
2009.12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및 53종(3종 폐지 포함) 개정(총 290종)
2010.12	행정표준코드 20종 추가제정 및 19종 개정(총 310종)
2011.7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총311종)

(『2012 국가정보화백서』 314면, 재인용)

47) 『2012 국가정보화백서』, 318면.

48) ‘2단계 국가DB 구축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식자원 원시자료의 잔여물량 파악과 증강현실, 모바일 웹 등 IT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활용성을 중심의 국가 DB 사업으로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립하게 되었다.

49) 『2012 국가정보화백서』, 319~321면.

업에 필요한 인력은 원시자료에 대한 자료 관리, 스캔, 원문입력 등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추출·입력, 자료 연계, 점검, 검증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와 고전적 자료의 해제, 번역, 교열 및 동영상, 음성, 3D DB 등 전문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DB 사업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였다.

2011년 국가 DB 사업을 통하여 2,437명의 고용인력 포함,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만9,3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⁵⁰⁾

【연도별 국가 DB사업 고용인력】

연 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고 용 인 력	37,389	15,448	10,619	10,006	9,463	4,010	2,437	89,372

(자료: 『2012 국가정보화백서』, 324면 참조)

국가 DB를 서비스하는 국가지식포털은 향후 공공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정보 목록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정보의 세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공개여부, 활용가능성, 제공방법 등의 정보 등도 제공함으로써 공공정보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정보를 한곳에서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사이트인 공유자원포털(data.go.kr)을 운영하여 Open API 기반의 공유 서비스,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 표준 응용프로그램 컴포넌트 등을 제공하여 민간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며 추후 국가지식포털과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공공정보 제공 관련 창구를 공유자원포털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0) 『2012 국가정보화백서』, 324면.

이 밖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제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개정 전에도 적극적인 공공정보 개방·활용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토록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⁵¹⁾

제 2 절 디지털 공공정보의 활용

1. 디지털 공공정보 활용가치

공공기관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수행과정에서 양질의 공공정보를 수집·생산·분배한다. 취급되는 정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산되므로 민간의 영리목적의 정보에 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질적·양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정보는 방대하고 광범위하며,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국가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구축 등 국가정보화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유와 활용이 용이한 디지털화된 공공정보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²⁾

공공정보의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종합계획(2010.3.3.)’에 따르면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이용하

51) 『2012 국가정보화백서』, 326면.

52)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4면.

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⁵³⁾ 또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해당 공공정보만을 활용하여 주된 사업을 제공하기 보다는 주된 사업과 연계된 결합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⁴⁾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향후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매쉬업(mash up)⁵⁵⁾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기대된다. 해외의 경우 EC 부위원장인 닐리 크뢰스(Neelie Kroes)는 ‘더 많은, 더 좋은 공공정보의 활용은 국민에게 더 많은 가치와 선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정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⁵⁶⁾

정치적·사회적 가치차원에서 본다면 공공정보의 활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정보 채널을 부여 받음으로써 공공기관 자체에서 수행하는 정보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 이양·위탁에 의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보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은 공공정보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⁵⁷⁾

53)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민간기업의 사업효과를 주사업에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활용하는 ‘직접매출효과’와 기업의 브랜드 및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간접매출효과’로 구분하여, 주 사업에서 ‘직접매출효과’란 주로 경매, 법령, 기상, 신용, 교통, 특허정보 등을 재가공하여 유료 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례를 들 수 있다.(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6-04, 2008.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4) 황주성 외, 위의 논문, 34면.

55) IT분야에서 매쉬업이란 웹상에서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두산백과 참조).

56)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11.12, 4면.

57) 류현숙,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6, 53-54면.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 간 경쟁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콘텐츠 개발자(contents originator)로서 뿐만 아니라 활용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국가지식정보자원 활용의 중요성으로 ▲ 공동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 정보제공산업의 육성 효과, ▲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정부부처간 또는 공공기관간의 업무 효율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 상호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 편의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⁵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로 인한 대민 서비스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단 한번 방문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민원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민원인이 자택 혹은 사무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민 서비스는 결국 공공정보의 공동 이용과 이를 뒷받침해줄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응용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⁵⁹⁾

2. 디지털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1) 개 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란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⁶⁰⁾ 일반적으로 민간활용의 개념은 공공부문의 재화(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민간활용은 재화의 단순

5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해외 공공정보자원의 상업적 활용사례와 국가지식 정보자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연구”, 연구보고 05-18,

59) 류현숙, 전개논문, 56면.

6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12), p.9.

한 이동이나 제공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적절한 보상과 권리 이전이 수반되는 이용까지 포괄한다. 이와 같은 민간 활용은 이용되는 재화 자체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뿐만 아니라 재화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상용화(Commercial use)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⁶¹⁾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재량으로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⁶²⁾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상업적⁶³⁾ 혹은 비상업적⁶⁴⁾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상업적 활용이란 통상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상업적 활용이란 비영리목적으로 단순 열람, 학술 및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⁶⁵⁾

이러한 민간활용은 현재는 공공기관의 업무상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과 활용으로 한정되지만 향후에는 공공기관이 공공재의 생산자로서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일정한 시장경제에 맞게 제공되는 공공선택으로 확대될 수 있다.

6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가 디지털 경제를 움직인다: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가이드 라인』, (2007.1), p28.

62)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63) 상업적 활용하는 경우란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가공하여 건설회사에 건설현장별 온도, 습도, 강수확률, 예상 강우량 등의 작업기상도를 유료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 참조).

64) 비상업적 활용은 기상청 기상정보를 친목 목적의 동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이나 비회원들이 옥외 행사 등을 준비하는데 해당 정보를 참조하도록 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12, 10면)

6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12, 10면.

2)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영역별 가치

현재 민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공공정보로는 교통정보, 기상정보⁶⁶⁾, 지리정보⁶⁷⁾, 법률정보⁶⁸⁾, 특허정보⁶⁹⁾ 등이 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 이용자 그리고 DB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정보가 비즈니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공급함으로써 보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화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공공정보를 제공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화에 재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정보화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⁷⁰⁾

66)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보로서 일반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맞춤형 날씨정보, 항해를 위한 해상기상, 건설업을 대상으로 기상 컨설팅 사업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유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 참조).

67) 지리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되며 지도제작, 온라인 맵서비스, 내비게이션 등을 하는 특정 사업자들에게 제공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쳐 책자, 웹서비스,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 참조).

68) 법제처에서 제공되는 법률정보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서비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자에 의해 변호사, 법학교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을 위한 국내외 판례정보 등 고급 법률정보서비스나 법학분야 논문정보 등 유사 DB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활용하기도 한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 참조).

69) 특허청에서 생산하는 특허정보는 보급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유·무료로 제공되는데, 이 특허정보를 민간사업자들은 유료로 제공받고 변리사, 기업 연구개발센터 등 특수 수요자들을 위한 고급 특허정보 서비스로 개발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12, 참조).

7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12, 11면.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부문별 가치】

구 분	부문별 가치 효과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 활용도 증가 및 투자가치 극대화 - 경제적 이익의 재투자로 인한 국가정보화 발전의 선순환 고리 형성 -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국민의 권리 충족 및 국정 투명성 보장 - 정보 및 공공기관 내 공공 서비스 업무 부담 경감
민간사업자 (개인개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창출의 기회 확보 - 투자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유도 - 신규 지식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보 선택 증가 - 국가기관의 운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 유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서비스 산업 활성화 촉진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유도 - 국가 경제 산업 부분의 고부가가치 창출 - 고용 창출과 지식기반 경제로 이전 유도 - 다양한 기술산업 발전 유도 - 정보기기 보급 확대 가능

(참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8권 제4호, 2013.8, 126면, 자료 요약 정리)

양질의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정보 제공자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관련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서비스의 원천인 정보의 양적·질적 확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및 영역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⁷¹⁾

71) 허필선 외,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8권

또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이를 통한 민간기업의 수익창출 기회 제공, 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열린 정부 구현,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제고 등을 유도할 수 있다.⁷²⁾

한편,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보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정보 선택의 폭과 정보 향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⁷³⁾

산업적 측면에서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는 원천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DB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DB이용을 활성화시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⁷⁴⁾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영역별가치】

구 분	영역별 가치 효과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⁷⁵⁾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대 - 높은 부가가치 창출 및 타 경제산업 활용 지원 -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유도
정치·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보 채널의 선택권 부여 - 국민의 알 권리 확대 - 정부와 시민사회의 쌍방향 소통 -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8, 127면.

72) 허필선 외, 위의 글, 127면.

7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12, 12면.

74) 허필선 외, 위의 글, 128면.

75)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우수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구 분	영역별 가치 효과
행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 행정업무 감소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간 업무효율성 증가 - 행정서비스의 유연화 및 전문화 유도 - 원스톱 및 논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참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제28권 제4호, 2013.8, 127면, 자료 요약 정리)

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효과를 가지며, 이는 공공정보를 주 사업에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활용하는 ‘직접 매출효과’와 기업 브랜드 및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간접 매출효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2013, 127면).

제 3 장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개 요

지금까지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방안이 있어 가장 큰 장애로 지목되어 온 것은 근거 법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안전행정부의 「공공정보제공지침」,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 등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고시하였고, 2011년에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⁷⁶⁾이 국회의 발의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각 부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⁷⁷⁾

국가의 공공정책 및 공공정보가 개방·공유, 활용이라는 가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산업진흥 및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적 정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고 개별 법과 관련 정책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의 유통에 대한 근거 및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설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 부재로 인해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만, 민간의 수요가 많은 기상정보, 교통정보, 지리정보 등 일부 공공정보의 경우, 해당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상업적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⁷⁹⁾

76) 동 법률(안)은 2013년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되었다.

77)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11.12, 17면.

78) 위의 책, 19면.

79)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

한편, 부처마다 개별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 기관과 수요기관 간의 수평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⁸⁰⁾

이와 같이 공공정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은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정보제공 처리절차 부재 내지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며, 공공정보를 원하는 민간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⁸¹⁾

이러한 제도적 기반미흡은 공공정보 개방정책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안전행정부와 국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일부 법률은 시행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입법의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공정보 개방의 가장 큰 장애로 지목된 근거 법률의 미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와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⁸²⁾

제 2 절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 현황

1. 개 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10면.

80) 황주성 외, 위의 책, 44면.

81)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12.10, 19~20면.

82) 위의 책, 20면.

이는 법률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을 대립구도에 두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을 감시,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함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공개된 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급부의 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행정적 역할 수행에 있어 발행하는 내용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자화된 정보는 공공기관 간의 공동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 시킬 수 있어, 행정본연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⁸³⁾

이와 같이 정보화란 단순히 기술적 진보와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행정의 편의 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으로 진화시켜 민주국가의 목적에 합치된 형태로 현실화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을 당시 전자화된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우려와 감시문제, 현실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논의의 대상이 산재하였고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혁신과 정보의 자유 구현을 통한 행정 참여의 확대와 질적 성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⁸⁴⁾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의 경우 공공정보의 범위 내지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정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① 공공기관 및 공공정보의 정의 및

83) 권현영 외, 「정보공개법을 통한 행정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열린정부의 심화」, (2012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민생과 행정’ 자료), 6면.

84) 권현영, 「정보권의 확장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법제』 2013.4, 31~32면.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② 분야별·관할 부처별 공공정보의 제공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법률, ③ 공공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제한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는 관련 법령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⁸⁵⁾

【공공정보제공 관련 법률】

구 분	법 률 명
공공기관 및 공공정보 정의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범부처수준의 정보제공 관련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 제공정책 분야별 근거법률	기상법(기상청) 통계법(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연구원) 발명진흥법(특허정보원) 공간정보산업진흥법(국토해양법 등)
공공정보제공 제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비공개 대상정보) 저작권법(권리처리)

85) 권헌영 외, 「정보공개법을 통한 행정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열린정부의 심화」, (2012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민생과 행정’ 자료), 10면.

구 분	법 률 명
	행정조사기본법(행정조사관련 정보 활용제한) 국유재산법(국가재산 처분제한, 비용산정, 활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자체 재산 처분제한, 국 유재산법과 동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수 집 및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제한) 주민등록법(개인정보 처리제한) 국가계약법(계약에 의한 공공정보 처리 등)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21면)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956호)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된다.⁸⁶⁾ 또한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법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이 법률은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자유로운 활용을 어렵게 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편익이 증진되고 나아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⁸⁷⁾

86) 2013년 7월 30일 공포, 2013년 10월 31일 시행.

87)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2013.7.30.,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공공데이터 제공 문제는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⁸⁸⁾

2008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이 신청을 한 경우 심사를 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다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먼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주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⁸⁹⁾

동 법률은 제안이유로 “공공데이터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스마트 산업의 핵심자원을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⁹⁰⁾

또한 국민의 이용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⁹¹⁾

향후 급증하는 공공데이터 및 그에 따른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정보의 민간제공과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의 자체 노력과 더불어 공공정보 관리 및 개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88)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6, 3면).

8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바로바로의 증얼증얼, <http://www.ddokbaro.com/3707>).

90) 향후 교통정보, 기상, 공간,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국민의 생활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소재로 활용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6, 2면).

91) 안전행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6, 3면.

1) 주요 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전체 6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보칙, 제6장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

위원장(2)	위 원(33)	간 사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안행부 장관
대통령이 지명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3년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⁹²⁾

92) 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공공데

기본계획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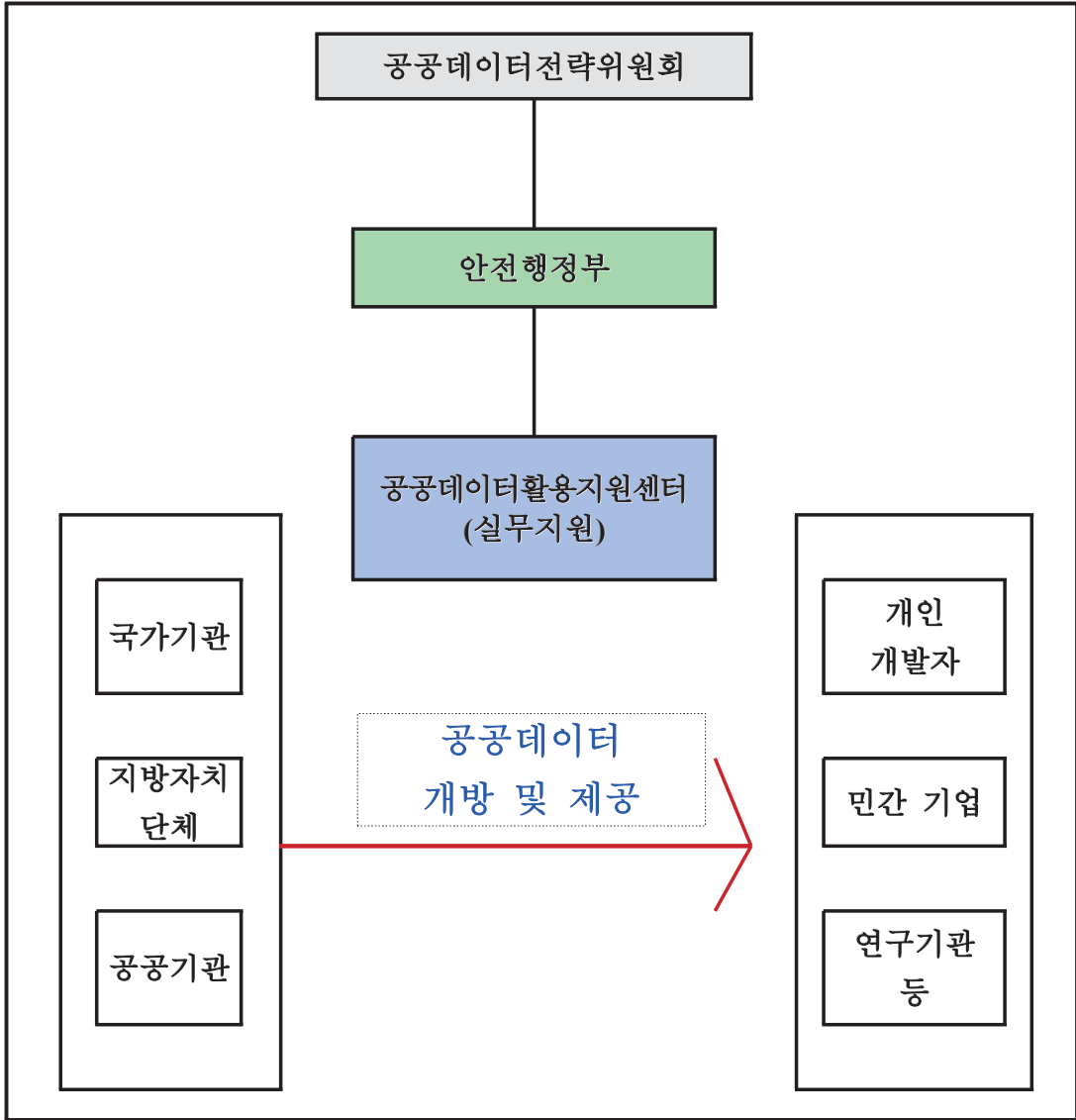
동 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등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이는 동 센터가 개별 공공기관의 제공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창구의 일원화·단순화를 통해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⁹⁴⁾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93) 법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94) 안전행정부는 2010년 6월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공공정보화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요청건수는 689건이나, 민간제공건수는 308건에 그치고 있는 등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는 바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어 실행력이 미약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을 마련하였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년 6월 안전행정위원회, 17-18면.)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출처: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7.30.)

④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과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이는 민간이 공공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이 구현되도록 하는 세밀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⁹⁵⁾

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제공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 임의적으로 민간의 접근을 제한·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⁹⁶⁾

⑥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안전행정보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표준화의 내용은 ▲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95) 권헌영, 「정보권의 확장 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법제논단』, 2013.4, 40면.

96) 안전행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년 6월, 20면.

⑦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개별 공공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일반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⁹⁷⁾

⑧ 공공데이터의 제공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표된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⑨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97) 안전행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년 6월, 23~24면.

러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공공데이터가 이용되는 본래의 공적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 중단 요건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합법적 이유가 없는 제공거부나 제공중단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⁹⁸⁾

또한 법에 따라 성실히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직무를 수행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⁹⁹⁾

2)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방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동 법률 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과 활용으로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평균 23조 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연간 평균 10조 7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⁰⁾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여 각종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공데이터

98) 권현영, 위의 논문, 41면.

99) 법 제36조(면책).

100)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국회의원 진영, 김을동, 2012.10, 56~57면.

를 차별 없이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젊은 층의 창업유발 내지 1인 창조기업유발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¹⁰¹⁾

또한 이러한 법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광범위한 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민간 자생적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전자정부를 통한 궁극적 행정목적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¹⁰²⁾

또한 동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각급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통해 시장 수요(Needs) 조사 및 민간의 견 수립 절차가 필요하며, 「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DB 품질 관리, 라이선스 및 권리관계 정립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간활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DB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각 기관은 오픈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도록 DB 개방형·표준형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¹⁰³⁾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의무를 가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⁰⁴⁾

정보공개법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주체의 요건이나 절차·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

101)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7.30. 참고.

102) 권현영, 위의 논문, 41면.

103)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9.17. 참고.

10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 132면.

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에서도 정보공개청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¹⁰⁵⁾

동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은 일반 개인수준에서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 기업에 의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규율로 볼 수 없다.¹⁰⁶⁾

1) 정보공개 원칙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원칙에 따라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⁷⁾

제8조에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9조에 열거된 공공정보는

105) 최진원,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2012.4, 247면.

106)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국회의원 진영, 김을동 의원실 발행, 2012.10, 42면.

107)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⁸⁾ 그러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⁹⁾

108)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09) 제9조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2) 공공정보 청구권의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는 모든 국민이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¹⁰⁾

국민의 공공정보 청구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과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적절한 규모의 정보공개 담당인력을 배치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¹¹¹⁾ 또한, 제8조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절차

제10조는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¹¹²⁾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공정보의 청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은 공개가 결정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110) 제 5 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 6 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2) 제10조(정보공개절차)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한다. 또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공공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가 아닌 공공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정보의 실정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¹¹³⁾

4) 정보공개와 청구 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인·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전자정부법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하는데,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

113)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⁴⁾ 또한 전자정부법 제1조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목적을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¹¹⁵⁾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결국 실제 업무수행을 전자화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¹¹⁶⁾

정보화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사회의 정보화기반이 양적으로 성장하여 본격적으로 정보화시대로 이행하면서 전자정부를 정부 혁신의 모델로 새롭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업무 자동화,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정부를 구현하면 부처별·기관별로 분리되어 관리하던 유관업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정부의 서비스와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고려 등이 있었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히 행정의 대국민 편의제공 및 행정내부의 효율성 증진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관련 정책을 통하여

114)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115) 민주성의 이념은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와 조직 내의 민주적 관리를 의미하는 조직내적 민주성(organization democracy)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민주성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행정에 반영시키는 대응성(responsiveness)의 확보 및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조직 내적 민주성은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욕구 및 정서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리를 지향한다. 따라서 하의상달·분권화·자아실현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조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전자정부법상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조직 내의 민주적 관리를 의미하는 조직내적 민주성의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유동해, 하동석, 행정학용어표준연구회, 2010.11.23., 새정보미디어 참조).

116) 권현영, 위의 논문, 29면.

국민들이 행정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정책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행정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¹¹⁷⁾

그러나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의 제공수단을 인터넷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제공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간의 자유로운 행정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대상 또한 행정정보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정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근거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¹¹⁸⁾

1) 주요 내용

① 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¹¹⁹⁾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17) 권현영 외, 「정보공개법을 통한 행정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열린정부의 심화」, 한국행정학회, 2012 동계학술대회, 『민생과 치안』 발표자료, 3~4면.

118) 배성훈 외, 위의 자료, 42면.

119)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ITA)는 업무 활동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인 기술 참조 모델,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표준인 표준 프로파일(Standards Profile)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

②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및 비용 부담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보도·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된 정보, 도로의 개통 시기, 기상정보,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 등을 말한다.¹²⁰⁾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행정기관들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

120) 시행령 제14조제1항

1. 보도·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통수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 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 제1항¹²¹⁾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통계·문헌·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등이 있다.

⑤ 행정정보의 유통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행정정보공개의원칙,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수수료 등, 전자적 업무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련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까닭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121)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1항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성격이 행정업무의 전자화 못지않게 대민서비스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외면한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¹²²⁾

⑥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을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하여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²³⁾ 국민 생활에 이익이 되는 정보와 민원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도 있다.¹²⁴⁾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가 등이 직접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산업적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염두에 둔 법령들은 아니다.¹²⁵⁾

5.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은 법률 제11688호로 2013년 3월 22일 일부개정을 거쳐 3월 23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

122) 김재광,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pp.300~301.

123) 「전자정부법」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적,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참조.

12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24(G4C)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근거법이 되어 왔다. 그 외에도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는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지원을 위하여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최진원,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2012.4, 248면).

125) 그 외에도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최진원, 「최진원,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2012.4, 248면).

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국가기관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¹²⁶⁾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 유통,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보장·공유를 위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재활용의 근거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민간기관과의 협의체구성(제19조)이나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의 제공 요청에 대한 조문도 있지만(제27조 제3항), 이 역시 상업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¹²⁷⁾

그러나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지식과 정보의 유통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없이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자원 중 민간제공 대상을 중요지식정보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¹²⁸⁾

1) 국가정보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언급하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126)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27) 최진원, 위의 논문, 248면.

128) 배성훈 외, 위의 자료, 41면.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는 정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다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①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②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③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④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의 지원, 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⑥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⑦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⑧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⑨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⑩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⑪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⑫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

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정보통신의 윤리의 확립을 위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②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③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④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⑤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공공정보의 공유 및 유통과 관련해서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¹²⁹⁾

5)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

129) 「국가정보화법 시행령」 제17조.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³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³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¹³²⁾

제 3 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현황

공공정보는 사회·경제적 이용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신규 일자리나 서비스 및 상품개발의 원천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으로 공공정보의 가치를 증대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수입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정보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소관 공공정보의 사회적 인지도가 증대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공공정보의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전체적으로 발전적 구조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신뢰성 높은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관련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부가가치 창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¹³³⁾

130) 「국가정보화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131) 「국가정보화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32) 「국가정보화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133) 김영철·신신애·권영일,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공공정보 개방·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관련 정책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정보의 유통에 대한 근거 및 표준화된 절차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설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하는지가 불명확하여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간의 수요가 큰 기상, 교통, 지리정보 등의 공공정보의 경우 해당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상업적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 및 기관마다 개별 법률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화되고 통일화된 절차와 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설령, 개별 법률이 있는 경우라도 제공기관과 수요기관 간의 관계에 따라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¹³⁴⁾

1.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별 법제 현황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일반법은 없지만 「기상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¹³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¹³⁶⁾ 등 개별 법령에 기초하여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용 플랫폼 정책 연구”, 『정보과학회지』 특집원고, 2011.6, 41면.

134)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44면.

135) 「발명진흥법」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 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1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 조(신용정보업의 육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기상정보는 가장 활발한 민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기상법」에서는 기상산업의 진흥 및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³⁷⁾ 또한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하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정보의 경우에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⁸⁾ 이는 교통조사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민간 제공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¹³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¹⁴⁰⁾ 또한 이러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⁴¹⁾ 국가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137) 「기상법」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지식이 국민 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제1항.

139) 황주성 외, 위의 논문, 53면.

140)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4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¹⁴²⁾

특허정보와 관련해서는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민간활용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자금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¹⁴³⁾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⁴⁾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기초하여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많은 부분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활용 근거에 대한 법률 규정은 있으나 각각의 공공정보마다 근거법과 해당 기관이 다르고 비용 지불 방식 등이 달라 전체적인 공공정보의 민간 이용을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를 활성화하고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정보의 공통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¹⁴⁵⁾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28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4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143) 황주성 외, 위의 논문, 53면.

1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145) 황주성 외, 위의 논문, 54면.

2.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1) 공공정보 개방의 국내현황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50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공정보를 활용한 앱 서비스 사례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교통정보, 유가정보, 의료정보 등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는 국민 생활 밀착형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¹⁴⁶⁾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플랫폼으로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공유자원포털』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공유자원포털』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Data Hub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DATA 공공데이터포털 .GO.KR' and various utility links like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사이트맵', 'ENGLISH', and social media icons.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tabs for '공공데이터', '오픈 API', '활용지원센터', '개발자LAB', and '공공데이터포털은'. A secondary navigation bar lists categories like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데이터 개발정책', '기술표준', '오픈 API를 및 가이드', '이용안내', and '약관 및 방침'.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Related Site' with links to '공공데이터포털 facebook', 'Korea Data Hub', and 'codeNamu'; a search bar for '공공데이터 검색';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a list of recent updates; and three large statistics boxes: '개방현황' (279 기관, 895,186 건), '공공데이터' (894,948 건), and '오픈 API' (238 건). At the bottom, there are sections for '활용사례' and '관련사이트'.

146) 김영철 외, 위의 논문, 42~43면.

『국가공유자원포털』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백서를 비롯하여 테마별로 전문가가 선정한 최신 이슈 및 테마와 관련된 지식모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정보의 개방현황에 대해 지역별, 분류체계별, 제공기관별, 활용방법별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방 가능한 공공정보를 제공기관에 제공 신청 또는 제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중계신청 등을 할 수 있다.¹⁴⁷⁾

『국가공유자원포털』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확대와 함께 공공에서 보유한 정보의 개방을 위한 공간이 되고, 민간에서는 개방된 정보의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의 양방향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⁴⁸⁾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상 기관별 개방현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조직이 612종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566종), 국가행정기관(419종), 교육행정조직(49종), 입법조직(32종) 그 밖에 헌법조직, 민간기관, 사법조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정보 개방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정책, 교육, 방송통신, 여행·관광, 국토관리, 문화·예술, 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분류별 개방현황】

분류명	합 계	OPEN_API제공	DATA제공
전 체	1713	41	346
공공정책	251	6	6
교육	172	2	43
방송통신	163	0	145

147) <https://www.data.go.kr/#/L3B1YnMvcG90L0lyb3NJbnRyb0luc3R0JEBeMDYxbTY> 참조 (검색일: 2013.10.30)

148) 김영철 외,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공공정보 개방·활용 플랫폼 정책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6, 44면.

제 3 장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류명	합 계	OPEN_API제공	DATA제공
여행·관광	118	5	8
국토관리	106	2	12
문화.예술	93	5	24
산 업	92	0	24
수송.물류	84	5	2
역 사	81	2	28
농축수산	56	1	9
고용.노동	52	2	1
환 경	50	0	12
통 계	44	2	0
과 학	39	2	14
식품.의약품	39	2	0
생물 및 산림자원	38	1	3
법 률	37	2	8
재해예방.안전	31	0	1
복 지	29	1	0
정 치	24	0	0
보건의료	21	0	3
재 정	16	0	0
체 육	15	0	0
통상.교역	12	0	0
기 상	11	1	0
치 안	11	0	2
외교.국제관계	6	0	0
국 방	6	0	0
출입국행정	4	0	0
남북관계	4	0	1

분류명	합 계	OPEN_API제공	DATA제공
금융	3	0	0
보훈	3	0	0
9	8	7	6

(제공 : 국가공유자원포털)

공공정보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고시(2010.7)하여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공공정보 제공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정보, 제3자 권리포함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게 개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 정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관 등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보제공 차단을 지양하고,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¹⁴⁹⁾

2) 공공정보 활용의 목적

공공기관은 사회, 경제, 지리, 기상, 관광, 비즈니스, 특허 등 여러 분야의 활동 영역에서 폭넓은 정보를 수집, 생산, 분배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들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그들의 목적에 따라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T 분야가 일상화되면서 생활문화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

149) 김영철 외, 위의 논문, 43면.

으므로 국내에서도 원천정보로서의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⁵⁰⁾

공공정보의 활용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를 기업의 사업목적에 의해 수집·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위한 수집·이용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제공서비스, 뉴스레터·분석보고서 등의 자료 배포·판매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활용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의 경우와 같이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기업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활용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¹⁵¹⁾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2008년도 『공공정보 활용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구체적인 공공정보 활용 목적과 관련 기업들은 무료 정보제공서비스구축이 유료 정보제공서비스구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서비스 기업들이 공공정보 활용시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수익모델보다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종의 집객 수단으로 활용하여 광고수익이나 회원 확보 등과 같은 간접적 수입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¹⁵²⁾

이와 같은 이유는 공공정보의 전반적인 정보 품질이 직접적 수익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공공정보의 활용 수준은 융합서비스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기업들은 책임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무료 서비스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⁵³⁾

150) 황주성 외, 위의 논문, 43면.

15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8년 공공정보 활용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08.7, 17면.

152) 동 보고서에서는 ‘공공정보 활용’의 해석범위를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행태로 규정하며 활용의 동기를 제공하는 ‘공공정보의 활용 목적’을 활용 행태가 실현되기 전 단계 활동으로 맞추어 ① 유료 정보제공서비스 구축, ② 무료 정보제공서비스 구축, ③ 외부 판매를 위한 자료 제작에 활용, ④ 외부 무료 배포를 위한 자료 제작에 활용, ⑤ 업무 활동을 위한 보고서 작성 시 참조자료로 활용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다.

15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글, 18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공정보가 망라성, 신뢰성 등 민간정보와는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은 공공정보의 잠재적 가치가 사회적 편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3)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사업자가 가공하여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통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¹⁵⁴⁾.

공공정보의 상업화란 사용자가 필요한 공공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이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정보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상 발생되는 정보자원을 디지털화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¹⁵⁵⁾

최근 공공정보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일종의 자원(Resources)으로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유료’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유료 제공은 공공정보의 생산·수집·보급에 투자된 비용 회수를 위해 수익자(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업화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의 상업화에 대한 찬반 논란의 핵심은 공공정보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적용 범위의 차이에 기인한다. 결국 공공성과 시장성이 혼재된 비용회

154) 박재현, 「공공정보 활용에서의 정책집행 게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36면.

155) 김재광,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 법제연구」,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2009.9, 9~10면.

수 영역의 경우, 정보시장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이나 협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영역에서 정보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며 유료화, 즉 상업화가 필요한 것이다¹⁵⁶⁾.

공공정보의 상업화란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그 효과와 활용가치의 의미가 달리 해석된다.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부(공공기관), 공공정보를 재가공하는 민간사업자, 그리고 최종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입장에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무료 또는 일정한 수수료를 댓가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재가공·판매권을 넘겨줌으로써 공공정보의 구축·관리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정보를 재가공,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투자된 비용 회수와 일정한 정보 이용 권리 허락 측면에서 성립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최종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한다.

셋째, 공공정보의 최종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이란 필요한 공공정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사용자는 유용한 민간정보와 마찬가지로 유용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결국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이란 정부·민간사업자·국민사이에 공공정보가 이용 및 교환가치를 지님으로서 일정한 상업적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⁵⁷⁾

156) 김준모, 『행정정보서비스의 상업화 가능성과 그 한계』, (서울:한국행정연구원, 2002), 15~16면.

157) 홍필기 외, 「공공정보자원의 상업화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정보화정책』제14권

현재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관련 법제도들이 다수 있지만 규정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커다란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사업자들의 요구와 일반 국민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단순한 공공정보 이용이 아닌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효율적인 정보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방면에서의 논의가 필요가 있다.¹⁵⁸⁾

제 4 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해외사례

1. 개 요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공공정보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주목해왔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소유의 지적재산권 및 공공정보는 공적 목적으로 마련되었긴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¹⁵⁹⁾

개별 국가의 공공정보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지리적 경계 범위를 넘어선 정보서비스 시장의 형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EU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공공정보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¹⁶⁰⁾

공공정보 상업화의 현실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보들도 공공정보 이용 활

제3호, 2007, 58~59면.

158) 김재광, 위의 논문, 18면.

159)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VII-RER-11100, 2011.12, 107면.

160)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59면.

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사례가 해외와 국내를 통틀어 매우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더욱이 성공사례를 발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¹⁶¹⁾

지금까지 해외의 경우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연구는 체계적인 결과보다는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날씨, 특허와 같은 특정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유통방식의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사례의 대다수는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공공정보의 제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자유접근을 취하고 있는 미국식 요소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취하는 유럽식 요소를 동시에 갖고 기본적인 정책의 틀과 구체적인 상업화 조치를 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기관은 마케팅 부서에서 직접 통계자료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통계청은 홈페이지에 유료 판매를 공지하여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공공연구기관에서 각종 자료의 회원제를 통한 판매를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¹⁶²⁾

미국은 활성화된 공공정보를 민간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많은 상용데이터베이스가 인구조사 데이터와 같은 정부기관의 공공정보를 토대로 구축되어 상용데이터베이스의 생산자는 이들 정보를 획득하여 부가가치를 통해 하나의 상용 데이터베이스 제품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정보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⁶³⁾

16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 34~35면.

162) 김재광, 위의 논문, 17면.

163) 방민석 외, 「해외 공공자원의 상업적 활용사례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2005.12), 2면.

이하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외 국가의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례 및 정책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미국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

2009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Open Government and Transparency MEMO(열린정부 및 투명성에 관한 메모)”¹⁶⁴⁾를 통해 공공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공공자산으로 재정의 하였으며, 공공정보 민간 활용 사이트인 ‘data.gov’¹⁶⁵⁾를 개설하여 모든 시민이 온라인상으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현재 미국은 더 많은 양의 공공정보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¹⁶⁶⁾

미국은 1966년에 제정된 「정보자유법」과 1980년에 제정된 「문서감소법」등을 통해서 공공정보 활용 원칙으로 민간의 자유 이용과 무료 제공을 중요시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정보정책을 채택·발전시켜 왔다. 특히, 연방정부의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관련 부처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고, 정보제공 비용은 그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한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정보의 흐름은 미국

164) 이 메모는 구체적으로 행정부서 및 기관들에게 그들의 운영과 결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제공해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것을 재촉하는 것으로 정부를 관련 정보의 유일한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165) ‘data.gov’는 연방정부의 행정부서에서 생성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기계 관독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공공정보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시민들이 쉽게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 받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게시하는 공간으로 각각의 데이터는 간략한 설명, 데이터 접근방법, 정보 조작 및 구분을 위한 시각적 도구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166) 류현숙,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6, 92면.

사회의 정보 상용화를 촉진하여 민간의 정보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정보산업을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는 것이다.¹⁶⁷⁾

1) 미국의 공공정보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1966년에 제정된 「정보자유법」은 일반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로서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일반인이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고, 공적 목적이든 사적 목적이든 간에 누구나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¹⁶⁸⁾

이 법은 1974년과 1986년에 개정된 후 1996년에 「전자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으로 바뀌었다. 「전자정보자유법」은 컴퓨터 사용이 확대되면서 전자적인 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 개별 정부기관은 요청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 판단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면 기한 내에 요청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 정보 요청을 요구받은 정부기관은 국가안보정보, 무역기밀, 법집행조사파일, 개인 정보, 가결문서 등에 한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제한 규정을 두며, ▲ 정보제공 비용의 일부는 요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탐색·복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¹⁶⁹⁾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개인에 의하여 신청된 형식이나 포맷으로 해당 기록을 쉽게 복사가 가능하고, 특정 형식이나 포맷으로 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복사할 수 있는 형식이나 포맷으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 53면.

168) 류현숙, 위의 글, 132면.

16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54면.

“기록”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가 해당되며, 여기에는 “전자적 형태”도 포함한다.

국민이 자료 요청을 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전자적 방법 및 형태로 자료를 검색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색이란 수작업 및 자동화 방법에 의하거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정부기록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52절(공공정보 기관규칙, 의견, 명령, 기록 및 절차)에서 각 기관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연방관보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며, 각 기관은 공표된 규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검색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⁰⁾

「전자정보자유법」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신청절차에 적용할 수수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또 그러한 수수료가 감면되어야 할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확립하는 규정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록이 상업용으로 신청될 경우에 수수료는 문서탐색, 복사 그리고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본비용에 한정된다. 수수료 기준은 탐색, 복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직접 비용만을 충당하도록 정한다. 조사비용은 당해 문서가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또 어떤 부분을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서를 초기에 조사하는 동안 발생한 직접 비용만 포함한다.

기록이 상업용이 아닌 교육용 또는 비상업적인 과학단체가 신청하거나 언론매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문서 복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본비용으로 제한된다. 문서의 정보공개가 정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자의 주목적이 상업적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있는 경우라면 무료 또는 규정된 수수료보다 감면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⁷¹⁾

17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 관련 해외 정책 사례 연구(I)」, 2004.12, 34~35면.

17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36면.

미국에서는 「전자정보자유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모든 정보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 요청 시 정보의 공개 제한 여부 확인 후, 저작권, 목록, 포맷 비용의 여부를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으로 제한한다. 이용자는 전화, 이메일, 방문을 통한 정보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¹⁷²⁾

(2) 문서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

1980년에 제정되어 1995년에 개정된 이 법은 연방정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문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은 정보수집 관련 문서업무를 줄임으로서 정부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유통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기관은 공공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시의 적절하게 배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독점적, 제한적 조치 혹은 기타의 조치를 행해서는 안 되며, ▲ 공공기관은 정보의 이용, 재판매, 재배포를 제한 혹은 제재해서는 안 되며, ▲ 공공정보의 재판매 혹은 재배포에 대해서 수수료 혹은 로열티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 공공정보의 배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정보의 공개에 관한 정부의 기본 지침을 고시한 통지문서로서 OMB(예산관리청) 통지문서가 있는데, 이는 「문서감소법」에 따라 정부차원의 정보자원관리정책의 총괄기관인 OMB(예산관리청)가 1996년 2월에 정부의 정보자원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측정하여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실행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내용 중에서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72)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78-79면.

- ▲ 정보는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서 공공에게 정부, 사회, 경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부의 운용을 관리하며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시장에서서는 하나의 상품이 된다.
- ▲ 정부와 일반 대중 사이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정부가 연방 문서업무를 최소화하고 정보활동 비용을 줄이고 정부정보의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업무에 속한다.
- ▲ 정부가 공공정보를 민간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 이익과 민간의 이익은 이에 투자되는 공공의 비용과 민간의 비용보다 커야 한다.¹⁷³⁾

(3) 미국기술우월법(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of 1991)

1991년에 「미국기술우월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국립기술정보국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타 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국립기술정보국의 위상이 급격히 신장되었다. 이 법에는 모든 연방기관은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영정보를 국립기술정보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개가 넘는 미국내 정부기관들이 국립기술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부기관에는 NASA, 농무성, 상무성, 국방성, 내무성, 노동성, 교통성 등이 포함된다.

국립기술정보국은 해외의 관련 정보를 캐나다와 일본을 비롯한 여러 해외 정부기관과 민간 그리고 개인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이로

17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 54~55면.

인해 국립기술정보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중심적인 정보센터로 기능하게 되었고, 이 분야의 정보는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국립기술정보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 연방정부예산을 사용하여 과학, 기술, 공학 분야의 정보를 생성하는 모든 연방기관은 정보가 생성된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국립기술정보국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 국립기술정보국에서 수집한 정보는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즉각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⁷⁴⁾

(4) 정부분서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정부분서제거법」은 연방정부가 공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부분서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문서감소법」과는 차이를 가진다. 「정부분서제거법」은 공공부분의 전자정부 구현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8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분서제거법」하에서 정부에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청받은 어떠한 개인도 정보의 열람 시 이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정보와 관련된 전자 서명이나 보안관련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정보 열람 선택권의 행사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예산관리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정책의 시행과 개정에 관한 책임을 진다.¹⁷⁵⁾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고기술경영자(CTO) 직위가 신설되었고, 각 부처·기관별 정보담당관(CIO)과의 협력 하에 열린정부 계획, 각 부처별 중점 추진 계획의 추진과 이행, data.gov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과 같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17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56면.

17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57~58면.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은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미국 Government 2.0¹⁷⁶⁾의 강점으로 열린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⁷⁷⁾

(5) 저작권법

미국은 온라인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상당한 수의 신규 고용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온라인산업의 발전은 풍부한 콘텐츠가 뒷받침하여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미국정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¹⁷⁸⁾

1976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어떠한 종류의 공공정보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한 법률로 연방정부가 공공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자로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정부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⁷⁹⁾

「저작권법」 제105조에서는 “본장의 규정에 다른 저작권의 보호는 미국 정부기관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정부는 양도, 상속 기타의 방법으로 미국정부에 이전된 저작권을 수령하여 그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⁰⁾ 그리고 제101조에서는 미국정부기관의

176) ‘Government 2.0’은 정부 서비스와 웹 2.0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웹 2.0 문화와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되는 새로운 정부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개념이다.(지은희, Government 2.0, 웹 2.0 시대의 공공서비스, 『SW Insight 정책리포트』제 19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7.3 참조)

177) 류현숙, 위의 논문, 137면.

178)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유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연구」, 2011.4, 41면.

17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 58면.

180)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is title is not available for any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recluded from receiving and holding copyrights transferred to it by assignment, bequest, or otherwise.

저작물(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을 “미국정부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에 의하여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¹⁾

여기서 미국정부란 연방정부만을 가리키며 주(state) 또는 기타 지역 정부(local government)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서 미국정부의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않고 공유상태(public domain)에 노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로고 등은 별도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정보기구(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로고의 경우 CIA Act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제105조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국내적 보호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외국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⁸²⁾

1999년 정부출판국(Government Printing Off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의 정부정보의 15%가량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약 2~3배 더 높은 비율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⁸³⁾ 실제로 2008년 미국 공군에서는 모병을 위한 비디오가 허락없이 유튜브에 올려진 사실을 알고는 유튜브에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해당 비디오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¹⁸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저작권법」은 연방정부의 저작물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와 미네소타주의 경우 주헌법 규정의 해석상 주정부의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원에서 주정부가 공공정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181) A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 work prepared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part of that person’s official duties.

182) <http://www.cendi.gov/publications/04-8copyright.html#317>

183) <http://www.infotoday.com/searcher/apr09/Klein.shtml>

184) <http://freegovinfo.info/node/1698>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Public Records Act에 의하여 주정부 문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¹⁸⁵⁾

물론 미국정부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미국정부의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개를 하지 않은 미국정부의 저작물은 당연히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를 발표하여 열린정부(open government)의 실현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관리예산사무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¹⁸⁶⁾

연방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법률」(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이 있다. 이 법에서는 재산(property)을 폭넓게 규정하여 무체재산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는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무체재산의 관리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법 및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기타 다른 법 등에 근거하여 연방정보의 관리에 관한 「관리예산사무국정책 A-130」(OMB Circular No. A-130)이 마련되어 있다.¹⁸⁷⁾

2) 공공정보 재이용 활성화의 이니셔티브

위에서 언급한 「관리예산사무국정책 A-130」은 정부정보의 공개에 관한 정부의 기본지침을 고시한 통지문서로서 PRA에 따라 정부차원의 정보자원 관리정책의 총괄기관인 OMB가 1996년 2월에 정부의 정

185) 이현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관한 법제도 연구”, 『엔터테인먼트법』, 제5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58-59면.

186) Barack Obama, 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available at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transparency_and_Open_Government.

187) 이현목, 위의 논문, 59면.

보자원 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측정하여 정보자원 관리정책의 실행을 평가하고자 공표한 것이다.

OMB 통지문서 A-130은 이후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등의 기본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고 2001년 11월 개정되었다. 통지문서 A-130에서는 공공정보의 이용, 재배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정부정보는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서 공공에게 정부, 사회, 경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부의 운용을 관리하며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하나의 상품이 된다.
- ▲ 정부와 일반 대중 사이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가 연방 문서업무를 최소화하고 정보활동 비용을 줄이고 정부정보의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 ▲ 정부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민간의 이익이 공공/민간의 부담비용보다 커야 한다.¹⁸⁸⁾

3) 미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1) 캔자스 정보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 of Kansas: INK)

캔자스 정보네트워크는 미국 캔자스 주정부와 카운티 및 기타 지방 정부의 공공정보에 대한 평등한 전자적 접근을 위한 서비스로 1990년 주 입법(K.S.A. 74-9302)을 통해 시작되어 1991년 정보기반기구로서 설립되었다.¹⁸⁹⁾ INK는 주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기구로서 주 정보의 감독을 받으며, 그 목적은 주 정부 정보의 관리, 보존, 배포, 재생산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주 정부의 행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⁹⁰⁾

188) 황주성 외, 위의 논문, 80-81면.

189) 황주성 외, 위의 논문, 81면.

190) Kansas State Statute, Chapter 74, Article 93. purpose and duties. It shall be the

INK는 전자정부 향상의 측면에서 컴퓨터와 유선전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단순한 공익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시장 지향적 모델을 도입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또한 INK는 공공정보 활용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INK 산하에 실제 민간 기업과 계약관계를 추진하는 공익기관으로서 KIC(Kansas Information Consortium)를 설립하였다. KIC는 INK 상임위원회의 감독 하에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 및 비즈니스 리더, 교육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시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⁹¹⁾

KIC는 완전히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6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999년에는 인허가 절차를 전산화하여 2000년에 완전한 공식적 주전자정부로 공인되었다. 현재 캔자스 주의 전자정부는 완전히 민간

purpose of INK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 (a) Provide electronic access of members of the public to public information of agencies via a gateway service;
- (b) develop a dial-in gateway or electronic network for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 (c) provide appropriate oversight of any network manager,
- (d) explore ways and means of expanding the amount and kind of public information provided, increasing the utility of the public information provided and the form in which provided, expanding the base of users who access such public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implementing such changes;
- (e) cooperate with the divis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s in seeking to achieve the purpose of INK;
- (f) explore technological ways and means of improving citizen and business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implement such technological improvements; and
- (g) explore options of expanding such network and its services to citizens and business by providing add-on services such as access to other for-profit information and databases and by providing electronic mail and calendaring to subscribers.

191) 황주성 외, 위의 논문, 82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정보의 제공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의 영역에 귀속되었다고 평가된다.¹⁹²⁾

2) 국가정보 컨소시엄(National Information Consortium: NIC)

국가정보 컨소시엄은 민간 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정부의 공공정보 활용 모델로서 아칸소주, 콜로라도주, 하와이주, 인디애나주, 아이다호주 등 18개의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NIC는 주정부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독점적인 라이선스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캔자스 주를 필두로 한 미국의 주 정부는 INK와 유사한 기관을 통하여 NIC와 같은 민간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완전히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NIC는 기업집단으로 KIC와 유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의결권 신탁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KIC를 비롯하여 인디애나 인터랙티브(Indiana Interactive), 아칸소 정보 컨소시엄(Arkansas Information Consortium), 네브라스카 인터랙티브(Nabraska Interactive) 등 4개 주에서 공공정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민간 기업이 NIC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¹⁹³⁾

3. 영국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

1) 개 요

영국정부에서는 현재 공공정보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사(公社)와 같은 개념인 ‘Public Data Corporation(PD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192) 이영대, “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연구: 미국 내 각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9, 47면.

193) 황주성 외, 위의 논문, 83면.

제공하는 별도 기관을 준비하는 것은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의 가치와 규모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¹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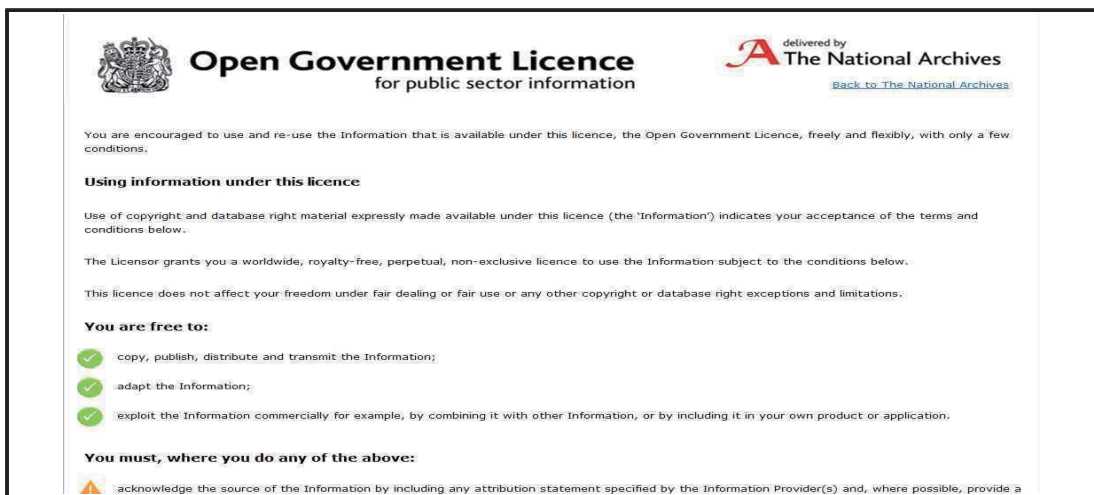
또한 영국은 공공저작물 라이선스 모델을 수립하고 2010년 9월 OGL (Open Government License)을 개발하였다. OGL은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다.¹⁹⁵⁾

OGL은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권리로 보호받는 공공정보와 공공콘텐츠, 소스코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공공정보 제공의 라이선스 규약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왕실 저작물에 대해 ‘The National Archives’가 이용허락을 주관하면서 정책의 수립이나 이용허락 절차 진행,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다.

영국의 OGL 의 적용범위는 ▲ 복사, 출판, 배포, 전송, ▲ 개작, ▲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자신의 상품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포함시켜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¹⁹⁶⁾

【영국의 OGL 활용】



194) 김영철 외,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공공정책 개방·플랫폼 정책 연구”, 『정보과학지』, 제29권 제6호, 2011.6, 47면.

195)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open-government-licence/>,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을 다루고 있고, ODC(Open Data commons License)는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OGL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새로운 규약으로 볼 수 있다.

196) 김영철 외, 위의 논문, 48면.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공정보나 공공데이터를 모두 OGL을 통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 영국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1)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2000)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정보 활용의 근간이 되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2000)을 2000.11.30. 제정, 2005.1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식의 기록된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허용함과 동시에 해당기관이 출판하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서비스요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대한 출판계획(publication scheme)을 수립해야 하고 일반국민의 정보열람 요청에 대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법령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정보담당관(Information Commissioner)의 책임 하에 출판계획을 적용,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출판계획에는 해당 기관이 출판하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서비스의 요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2)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에게 공공기관에 컴퓨터파일이나 서류상으로 보관된 자신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명시하고, 정보자유법에 개인 신상에 대한 예외규정과 함께 개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정보자유법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함과 동시에 국가안전 및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는 정책적 균형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사생활 보호측면에서 개인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 개인의 데이터 접근권, ▲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의 유통과 처리를 막을 권리, ▲ 직접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권리, ▲ 자동화된 결정권과 연관된 권리, ▲ 데이터책임자(data controller)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요청, ▲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쇄·삭제 또는 파괴할 권리 등을 지닌다.¹⁹⁷⁾

(3) 공공정보 재사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¹⁹⁸⁾

영국에서는 EU의 공공 정보재사용 지침(EU PSI Directive, 2003)에 따라 2005년 6월 공공정보 재사용 규칙을 제정하였다. 공공정보의 재사용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공공기관의 기록문서 또는 소리, 영상 등 전자적으로 저장된 문서 일체를 대상(제3조)
-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재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특정, 재사용 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 신청(제6조)
- ▲ 공공기관의 재사용 허가(제7조)
- ▲ 신속하게 답변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의 익일부 터 20일 근무일의 말일까지 가부여부의 답변의무(제8조)
- ▲ 거부시에는 이유를 부기하여 신청인에게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제9조)
-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제8조 제4항의 (b) 및 제8조 제4항의 (c)가 정한 바에 따라 재사용신청에 대한 답변시에 존재하는 형태로 조건을 붙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재사용의 요청에 적합하게 창출하거나 각색할 의무, 비례에 반하는 노력을 요하는

197) 한국전산원, 「공공 지식정보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방안 연구」, 2003.12, 30-31면.

198)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http://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legislation/directive-and-regulations.htm>

경우의 초록 제공 의무 및 다른 사람의 재이용 목적을 위해 일정한 형태로 계속 생산할 의무 등은 부담하지 아니함(제11조)

▲ 재사용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필요 없이 문서의 재이용방법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됨(제12조)

▲ 신청자간 차별금지 및 배타적 계약불허(제13조, 제14조)

▲ 수수료의 부과는 받은 수수료의 총수입이 문서의 수집, 생산, 재생산 및 분류의 수수료와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표준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함(제15조)

▲ 공공기관은 재사용의 조건, 재사용의 표준수수료, 재사용할 수 있는 주요문서의 목록,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실무와 관련하여 신청자 및 잠재적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정수단 등 정보를 공표하고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제16조)

▲ 공공기관은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공단체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믿는 자가 서면으로 이를 제기하게 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제17조)

▲ 제17조에 의한 이의를 거친 경우(내부이의 전치주의)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가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공공정보실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고, 공공정보실, 왕립출판실(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및 스코틀랜드 왕립인쇄실(The office of the Queen's printer for scotland)이 이의의 주체인 경우 이들 기관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정보자문단(The Advisory Panel on Public Sector Informat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18조)

- ▲ 공공정보에 대한 자문위원단이 위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처리와 그 이의에 재심사 등에 관하여 규정(제20조, 제21조)¹⁹⁹⁾

3)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관리 주체: 공공정보국(OPSI)

영국이 직면한 과제는 시민과 기업 및 공공부문의 이익을 위한 조화롭고 강력한 PSI(Public Sector Information)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제를 지지하기 위해 국가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소속의 공공정보국(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PSI)을 설치하고, ‘공공정보재활용규칙’의 준수와 왕실저작권(Crown Copyright)²⁰⁰⁾ 및 왕실 데이터베이스 권리(Crown database rights)²⁰¹⁾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²⁰²⁾

독립기관인 OPSI는 공공정보 재활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독려하기 위한 최고의 실무체제를 제공하며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의 공표와 동시에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의 효과를 설명하고 정책방향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규칙에 대한 행정지도도 공표한다. 또한 공공정보 보유자의 정보거래활동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에 근거하여 제기된 이의에 대해 공공정보

199) 황주성 외, 위의 논문, 66-68면.

200) 다른 국가와 달리 영국은 공공정보의 저작권을 왕실의 「Crown Copyright」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가진다. 즉, 영국 정부 간행물 출판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저작권인 Crown Copyright의 통제와 운영을 담당한다. 영국은 정부가 저작권을 가짐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보장하고, 출판물의 비용을 절감하며, 일반 국민이 공공정보를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정보를 활성화·상용화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 67면).

201)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은 ‘왕실저작권(Crown Copyright)’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다. 왕실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관리하는 책임은 공공정보국(OPSI)과 왕립출판실(HMSO), 스코틀랜드 왕립인쇄실이 담당하고 있다.(류현숙, 위의 논문, 105-106면)

202) 류현숙, 위의 논문, 101-102면.

보유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²⁰³⁾ 이외에도 영국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접근 및 안내 등 공공분야 정보의 게이트웨이(gateway)로서의 역할을 한다.²⁰⁴⁾

정보보유기관과 수요기관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OPSI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 제18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이의처리과정에 따라 OPSI에서 이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 및 재결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²⁰⁵⁾ 이러한 분쟁 해결 서비스는 정보 관리 및 재활용의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기록보관소의 역할과 공공부문에 걸쳐 공정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관행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OPSI는 정부의 거래 자금 및 기타 공공부문 정보 소유자의 정보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정보 공정거래 제도 (Information Fair Trader Scheme)’와 분쟁해결 서비스를 핵심도구로서 사용한다. 규제자인 국가기록보관소는 공공 조직을 위한 기준들을 평가하고 설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OPSI는 정보 거래에 연계된 공공 부문 조직들이 공정성 및 투명성의 기준을 만들고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장려할 것을 보장한다.²⁰⁶⁾

4) 공공정보 재활용 활성화의 이니셔티브

(1) Review of Government Information(정부정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0년 발표된 ‘정부정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영국은 정부정보의 획득 및 출판,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재이용 방법 등의 고찰을 통해 지식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203) 황주성 외, 위의 논문, 68-69면.

204) 류현숙, 위의 논문, 102면.

205) 황주성 외, 위의 논문, 69면.

206) UK Report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10.(류현숙, 위의 논문, 103면, 재인용)

검토보고서는 ▲ 온라인 라이선싱 서비스(Click-Use-pay), ▲ 정보정보의 라이선싱 및 과금 시스템 개발, ▲ 정부정보의 과금 및 배포 방법 개선, ▲ 부처, 기관의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최저가격 부과, ▲ 단속 기능을 수행하는 HMSO의 미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고찰, ▲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자산등록서비스(inforoute) 시행 촉진, ▲ 공공정보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가공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²⁰⁷⁾

(2) On-line Licence Service System

영국 정부는 OGL를 실시하기 전에 Click-Use License라는 온라인 라이선싱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Click-Use License는 왕실저작권이 있는 정부가 잠재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매커니즘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영국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달 약 10%의 click-use license만이 영국 정부로부터 발급되고 있다.

이렇듯 적은 양의 라이선스 발급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매우 성공적인 라이선스 모델로 인식이 되었고, 현재 정부의 투명성 의제 선포에 따라 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형태로 접근이 변화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 라이선스 제도의 핵심은 ‘열린정부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OGL)’이라 할 수 있다. OGL은 최소한의 이용조건만으로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9월부터 기존의 Crown copyright와 Click-Use License를 대체하고 있다.

OGL은 공공저작물 이용약관의 일종으로 포괄적 선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207) 류현숙, 위의 논문, 106면.

일반적 사용 허가시 권장된다는 점에서 ‘비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한다.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처리절차, 전담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하나의 라이선스에 법적필요와 요약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저작물의 개방에 있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⁰⁸⁾

그 밖에 영국은 정보자산등록제도(Information Asset Register)²⁰⁹⁾, 정보공정거래자 계획(Information Fair Trader Scheme)²¹⁰⁾ 등 온라인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정보 재활용을 장려하고 운영하고 있다.

4. EU 공공정보 활성화 현황

유럽의 일부 국가는 18세기부터 공공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그 후 많은 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유럽은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을 결성하여 범 유럽적인 정책과 지침을 개발·수행하고 있다. 즉, 공공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개별 국가는 EU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국내법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INFO2000 프로그램은 범 유럽적으로 정보산업과 공공

208) 류현숙,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6, 109-110면.

209) 1999년에 실시된 전자적 정보자산등록서비스 포털(www.inforoute.hmsa.gov.uk) 서비스로 정부정보자산등록서비스(Information Asset Register: IAR)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해 준다. 이 IAR은 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현재 미출간 data set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 주는 검색가능 IAR 2,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 지식정보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방안 연구」, 2003.12, 37면).

210) 정보공정거래자 계획(IFTS)은 주요 공공정보 제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정보 재활용을 장려하고, 재활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7월 추진된 계획이다. IFTS는 정부 거래 자금과 정부의 특정 다른 부분의 정보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감사 과정이다.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2, 21-22면).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개별 국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유럽 전체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단순히 알권리 충족에 그치는 정보공개가 아니라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따라서 공공정보의 개발과 활용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²¹¹⁾

1)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 지침(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EU는 1989년 「정보시장에서의 공공·민간부문의 시너지 개선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improving the synerg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information market)」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의 기본 원칙은 공공부문은 공공정보의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기존 정보서비스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공공부문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지침의 실행에 대한 강제성이 결여되어 공공정보의 상용화에 기여하지 못하였다.²¹²⁾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7일 ‘공공기관 정보의 재활용 지침(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제정하였다.²¹³⁾

21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58-59면.

2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59면.

213) Directive 2003/98/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본 지침을 2005년 7월 1일까지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했지만, 4개국만이 이 시한을 지켰으며, 그 후에 입법된 국내법에 대하여도 유럽위원회는 18개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유럽법원은 지침위반에 대하여 4개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 국가들도 아직 공공정보의 개방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현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에 관한 법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문화

이 지침은 공공정보의 개방에 따른 국정참여라는 민주적 목적보다는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공공정보에 기초한 범유럽 정보 상품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고, 민간사업자가 정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공공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¹⁴⁾

이 지침 제3조에서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서면, 전자문서, 음향, 동영상 등 모든 기록매체를 의미)의 비상업적 및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은 이용허락 조건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조건을 배제한 최소한의 조건이어야 하고,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¹⁵⁾

이 밖에도 이 지침에서는 EU 지역 내의 시장에서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공정보 재활용 요청 처리에 필요한 조건이나 제공형태 및 과금,²¹⁶⁾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문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²¹⁷⁾ 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²¹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EU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공공정보 재활용에 대한 입법체계를 정비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이에 대한 이행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서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연구소, 『엔터테인먼트법』제5권 제1호, 2011, 52면).

214) 황주성 외, 위의 논문,, 60면.

215) 이현목, 위의 논문, 52면.

216) where charges are made, the total income from supplying and allowing re-use of documents shall not exceed the cost of collection, production, reproduction and dissemination, together with a reasonable return on investment.

217) Any applicable conditions for the re-use of documents shall be non-discriminatory for comparable categories of re-use.

218) The re-use of documents shall be open to all potential actors in the market, even if one or more market players already exploit added-value products based on these documents. Contracts or other arrangements between the public sector bodies holding the documents and third parties shall not grant exclusive rights.

두고 있지 않아 EU 지침의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²¹⁹⁾

이 지침에서 언급하는 재활용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개별 회원국이나 관련 공공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현 형태는 회원국마다 다소 다르다.²²⁰⁾

2) INFO2000 프로그램

유럽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5년 G7회의와 EU포럼 및 전문가 집담회의를 통해 발족된 프로그램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수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콘텐츠산업이 정보사회의 핵심 사업임을 인식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INFO2000프로그램은 4가지의 실행지침(Acton L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정보의 접근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내 공공정보 디렉토리를 연결하며 공공부문에서 콘텐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실행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간 상황에 대해 비교·연구를 통해 녹색(Green Paper)을 발간하거나 공통 표준 포맷의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범 유럽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한다.

219)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지침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로 언급할 수 있다. 2005년 영국은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Re-us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을 제정하였으며, 프랑스도 「행정과 국민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및 행정·사회·재정적 성질의 재규정에 관한 법률」중 제1평 제2장에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2006년 12월에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최진원,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제16권 제1호, 2012.4, 243면).

220) 황주성 외, 위의 논문, 61면.

- 유럽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고품질 멀티미디어 타이틀 생산의 높은 초기 비용과 문화·언어 장벽을 극복하도록 노력한다.²²¹⁾

3) 공공정보에 대한 녹색(Green Paper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은 1998년 5월 「공공부문 정보 : 유럽의 핵심 정보자원(Public Sector Information: A Key Resources for Europe)」이라는 ‘공공정보에 대한 녹색’을 발표하였다. 녹색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는 공공정보의 중요성, 공공정보에의 접근 조건, 공공정보 이용에 대한 비용, 공공정보 활용에 있어서 경쟁원리 적용, 그리고 공공정보의 보호 등이 있다. 녹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정보의 고객인 국민과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지향적인 탐색 메카니즘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 비용부과는 국가별로 그리고 공공기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터넷에 의한 무료 정보제공이 확대되면서 비용부과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수익성의 비용부과의 주요 기준이 된다.
- 공공정보에도 EU의 경쟁 규칙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공공정보의 활용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정보조차도 비용의 기반 위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22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61면.

- 수익성과 콘텐츠의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각 국가는 베른 조약에 의거하여 공공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²²²⁾

5. 일본의 공공정보 활성화 현황

1) 개요

일본은 주요국이 추진 중인 중인 적극적인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과 재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를 통한 열린정부 실현 등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0년 5월 11일 발표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新たな情報通信技術戦略)’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신속한 제공,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등 공공정보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은 이 전략을 통해 국민중심의 전자행정의 실현, 지역망 재생,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제전개 등 3가지의 큰 목표로 새로운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였다.²²³⁾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필요시 one stop으로 이용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에너지·의료·관광·지역생활화 등 분야에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 관련 규제철폐 등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70조엔의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²²⁴⁾

한편, 일본은 공공저작물 등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산업성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openlabs.go.jp>)를 통해 공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

22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62면.

2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8권 제4호, 2013.8, 122면.

224) 『新たな情報通信技術戦略』、官邸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平成22年5月11日)

재로서는 주로 정부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정보 활성화라는 산업·경제적 측면보다는 공공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민의 국정참여라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²²⁵⁾

최근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정보를 민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2020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IT활용사회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²²⁶⁾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 데이터의 민간개방, 농업·의료분야에 IT도입, 국가·지방해정정보 시스템 개혁 등 세계최첨단 IT국가로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2) 관련 법률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공공정보의 공개와 정보공개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보공개가 제도화되어 왔다. 이리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공공정보 활용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정보의 활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공공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통계데이터에 관한 자기테이프 등의 민간 제공에 대한 요령’,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²²⁷⁾,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²²⁸⁾ 이 중

225)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NIA VII-RER-11100, 2011.12, 111면.

226) 日本經濟新聞、2013.6.27.일자 참조.

227) 행정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4년 실시되었다가 1997년 개정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정보통신기반을 통한 사무·사업의 효율화, 고도화,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신고 수속을 전자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통해 고도정보통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사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pp.44-45).

228) 국민주권이념에 근거하여 행정문서, 법인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제정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부와 독립행정법인 등의 제반 활동을 알려 국민의 신

에서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이 있는 ‘통계데이터에 관한 자기데이터프 등의 민간 제공에 대한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민간제공과 관련하여 총무청은 1987년 ‘통계데이터에 관한 자기데이터 등의 민간 제공에 대한 요령’을 각 정부기관에 지시하였다. 이 요령에는 공표된 통계 데이터를 자기데이터프 등의 파일로 수록하여 공익법인²²⁹⁾이 민간에 제공하고 제공비용은 실비를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통계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총무청은 1993년도부터 현행 법령데이터, 특허공보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기상데이터 등을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²³⁰⁾

일본은 민간 부문에 의한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된다. 하나는 2003년에 제정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법률 제57호)이고, 다른 하나는 2003년에 제정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법률 제58호)이다. 전자는 행정기관을 제외한 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이며, 후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따라서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민간 신용조회 회사가 이 공공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들이 적용되게 된다.

일본은 공공정보의 이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개의 법을 통해서 해당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 부문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³¹⁾

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각 기관에 문서열람창구를 개설하도록 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촉진하며, 공개대상 정보에는 조직·업무 및 재무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와 평가 및 감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사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45면).

229) 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 일본 통계협회, 통상산업성 조사통계부, 통상산업조사회 경제통계조사센터, 경제기획청, 사회개발연구소

23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71-72면.

231) 고동원, 「공공정보 이용의 활성화 방안」, 『The Banker』, 2011, 34면.

3) 자유이용마크제도

일본은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표시로 ‘자유이용마크제도’라는 독자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마크는 2003년 2월 7일 일본 문화청에서 공개한 것으로 홈페이지나 서적, CG 등의 저작물에 관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저작자가 마크를 문화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콘텐츠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며, 이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일정 조건 안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²³²⁾

자유이용마크 제도는 출력·복제·무료배포 OK마크,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OK마크, 학교교육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OK마크 등 3종류로 구성되며, 3종류 마크를 복수로 부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자유이용마크제도는 부착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행위를 대상으로 개발된 마크제도인 것이 특징이다. 복수의 권리자가 포함된 동영상, 음악, 초상권이 있는 저작물 등에 부착 금지, 마크 부착 후 철회 불가, 사용기간을 지정가능, 마크 부착 저작물의 검색 등을 위한 조치가 없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²³³⁾




동 마크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는 정확한 마크 부착 및 이용을 위해 저작자·이용자의 주의사항을 점검항목, Q&A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점을 들 수 있다.²³⁴⁾

232) 박재현 외,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3, 88면.

233)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11.12, 76-77면.

234) www.bunka.go.jp/jiyuriyo 참고.

【일본의 자유이용마크 제도】

마크	주요 내용
 コピー-OK	프린트 아웃 · 카피 · 무료 배포 OK마크
 障害者OK	장애자를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OK마크
 学校教育OK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OK마크

(출처: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참조)

자유이용마크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저작물 발표가 폭넓고 손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인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이용물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카피 OK마크는 인터넷에서 이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3종류 마크 모두 음악이나 동영상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²³⁵⁾

235) 이에 대해 문화청에서는 “인터넷에서는 저작물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이 마크는 사실상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 마크를 부착한 경우나 마크의 의미를 오해해서 부착한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음악 및 동영상에 관해서도 저작물을 MIDI(전자악기와 컴퓨터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화하여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동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몰래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마크 이용의 오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0.3, 90면).

제 5 절 문제점

현재 국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현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나 분석이 미흡한 현실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부처나 기관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²³⁶⁾

공공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안은 현재 총 24개 이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부처법이나 공공정보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법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제공 관련 사항의 근거로써 공공정보제공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당해 공공정보제공지침은 기존 분야별 공공정보 제공 법률과 상충되어 행정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제공대상·절차·비용 등의 사항에 대한 정치화가 미흡하여 정책 내용이 부실하다. 또한 그 성격이 행정규칙의 일종인 고시로서 정책적 근거와 추진력을 뒷받침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본법이 없다는 것은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규제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기본법에는 앞서 제시한 공공정보 총괄 플랫폼 정부 또는 기관의 성격과 역할, 부처와의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발전시켜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개별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도록 한다.²³⁷⁾

236)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120면.

237) 류현숙, 위의 논문,

1. 공공정보 민간개방 법제도의 한계

기존의 정보화 관련 「국가정보화기본법」²³⁸⁾, 「전자정부법」²³⁹⁾등 일부 정보화 관련 법률에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어 공공정보의 산업적 재활용을 포함한 상업적 활용의 근거라고 보기에 어렵다.

대부분의 법률이 민간개방 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개방수단 및 이용자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이용절차와 방법 등은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²⁴⁰⁾

기상, 공간, 통계, 특허 등 일부 분야는 개별법에 의해 민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통일성·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개방 근거를 두고 있는 개별법도 각기 다른 제공근거,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개방 대상도 일부 공공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전반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정보공개법」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권의 관리·감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입법 목적을 두고 있으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그 외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과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과 활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즉, 동법 제2조에서

238)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국가 기관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39) 전자정부법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40) 「국가정보화기본법」(대상: 중요지식정보자원), 「전자정부법」(대상: 행정기관 행정정보, 개방수단: 인터넷), 「콘텐츠산업진흥법」(이용자“ 콘텐츠사업자) 등

“정보를 연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방법이나 절차상 민간의 수용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속적 활용”, “실시간 데이터 제공” 등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와 수단, 절차를 규정하고, 영리적 활용도 보장하는 법제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²⁴¹⁾

2.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추진체제 필요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추진체계가 없어, 개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행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²⁴²⁾

현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어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 자체가 시행 초기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행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절실하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방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인력 등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국민, 기업 등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를 개별기관과 일일이 접촉하여 파악하고 수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²⁴³⁾

영국의 경우 총리 산하에 부가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241)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53-54면.

242)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46면.

243)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47면.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호주, EU 등도 국정최고책임자가 강력한 개방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²⁴⁴⁾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 3.0 구현, 경제적 가치창출 등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정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개방의지와 더불어 민간개방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강제화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가 절실하다.

3.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취약

전체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개방대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 자체도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파악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 기업 등이 현재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가 거의 없어 개방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다행히 2013년 10월 31일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도가 규정되어 각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있어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부족과 담당자의 교육 부재로 원활하게 운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인식 제고 및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²⁴⁵⁾

244)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46-47면.

245)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48면.

4. 민간의 공공데이터 통합 접근창구 취약

민간에서 어느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단일 통합창구가 취약하다. 국민, 1인 창조기업, 벤처·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를 개별기관과 일일이 접촉하여 파악·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공공데이터 통합개방 창구인 “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을 201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수나 그 제공서비스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다.

공유자원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대부분도 역사자료, 건설 기술 등을 민간 수요가 낮은 분야라는 이유도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민간에 공공데이터 통합개방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 활용 관련 문제도 지원하는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²⁴⁶⁾ 특히 미국은 2009년 5월 연방정부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통합 제공을 위해 “Data.gov”이라는 공공데이터 통합개방창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²⁴⁷⁾ 2012년 5월 연방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정부 전략(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을 발표하여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등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 전략을 마련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²⁴⁸⁾

246)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50면.

247) 현재 172개 기관이 지리, 교육, 인구 등의 공공데이터셋 약 45만여건, 정부개발 앱 약 1,300여종, 국민개발 앱 약 240여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Data.gov 외에도 35개주, 19개 도시가 자체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을 구축하고 개방하고 있다.(진영, 김을동,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2012.10, 29면).

248) 진영, 김을동, 위의 자료, 30면

【세계 31개국 공공데이터 통합개방 포털 현황】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50면, 재인용)

5.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기반 부족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는 민간이 단순 이용만 가능하며,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정, 추출, 변환 등의 가공이 어려운 상태이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내부와 인터넷 서비스 활용 목적으로 생성·관리하고 있어 민간이 가공·활용하기에 오류율이 높고 다소 한계가 있었다.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수정, 변환, 추출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Machine-Readable 포맷이어야 가능하다. 특히,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간 연계, 융·복합(Mash-up)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소프트웨어나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소스(Open Source)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형태별 선택 가능한 오픈소스 포맷】

공공데이터 형태	선택 가능한 오픈 소스
텍스트 데이터 등	XML, CSV, RDF
수치 데이터 등	XML, CSV, RDF
지리/공간 데이터 등	KML/KMZ, SHP, TAB, MID/MIF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포맷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오픈 소스 형태로 민간에 개방되고 있다. 또한 민간이 여러 공공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시맨틱 웹(semantic web)²⁴⁹⁾ 기술(RDF)²⁵⁰⁾ 기반의 LOD(Linked Open Data) 형태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²⁵¹⁾

한편, 민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의 종류는 실시간성 데이터(예: 교통, 기상, 대기오염 등)가 대부분이며, 현재 실시간성 또는 갱신주기가 짧은 데이터는 Open API²⁵²⁾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에서 Open API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13종으로 민간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행정부가 2012년에 22종을 추가 개발하고, 2016년까지 총 150종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에 있는 만큼 향후 실시간성 공공데이터를

249)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참조).

250) 시맨틱 웹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로는 자원 기술 개념(RDF)과 같은 웹 자원(resource)을 서술하기 위한 서술 기술, 온톨로지(ontology)를 통한 지식 서술 기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에이전트(agent) 기술 등을 들 수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참조).

251)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51-52면.

252)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Tool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데이터가 갱신되면 실시간 제공받아 활용이 가능한 방식.(안전행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6, 9면).

개방하고, 민간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Open API 개발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²⁵³⁾

【공유자원포털 제공 Open API 13종】

연 번	제공기관	서비스명
1	서울시	버스실시간 운행정보 서비스
2	서울시	보육시설 서비스
3	경기도	버스실시간 운행정보 서비스
4	안전행정부	공공취업정보서비스
5	문화재청	문화재정보서비스
6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7	기상청	방재 기상정보 서비스
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시 서비스
9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택배 조회 서비스
10	식약청	위해식품 서비스
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제안 신청서비스
12	법제처	생활법령 검색 서비스
13	국회도서관	학술자료원문조회 서비스
합 계	12개 기관	13종

253)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53면.

제 4 장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우리나라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1. 기상관련 분야 관련 법률

1) 개 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는 개별법을 통해 공공정보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²⁵⁴⁾ 등에서는 제한적이거나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 조성, 시책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²⁵⁵⁾ 민간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재활용을 허용한 것이다.

「기상정보진흥법」은 기상청이 제시한 인적, 물적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기상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²⁵⁶⁾

또한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기존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서비스 외에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예보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54) 기상정보는 예로부터 산업적 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미국 기상학 협회에 따르면 민간부문 날씨 데이터의 총 산업규모는 18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방정부는 날씨데이터의 공개로 1억달러 규모의 연간 예산을 들여 민간부문의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진원,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2012.4, 249면).

255) 예컨대 기상진흥법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고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256) 최진원, 위의 논문, 248-249면.

기상청에서는 기본자료, 기상관측자료, 국지기상관측자료, 항공기상자료, 수치분석 격자 점자 자료, 수치분석 그래픽 자료, 기초영상자료 등 민간예보사업자가 분석하여 예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²⁵⁷⁾

민간예보대상이 되는 기상정보는 생활기상정보, 농업기상정보, 교통기상정보, 수문기상정보(강수량 예측), 스포츠레저 기상정보, 마케팅기상정보(기상컨설팅), 수산기상정보(원근해해상기상), 관측용역정보(기상영향평가) 등으로 시·군·구이하의 국소지역예보, 특정해역 및 항공로예보, 공항지역 항공로예보를 수행한다. 민간예보사업자는 기상청으로부터 각종 기상정보를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아 예보사업을 하게 되며 민간사업자의 예보내용은 특정수요자에게만 제공되고 대중적 홍보나 유통은 할 수 없다.²⁵⁸⁾

이러한 기상분야의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기상업무법」(법률 제5232호, '96.12)과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415호, '97.6) 및 「동시행규칙(총리령 제648호, '97.7)」을 개정하여 '97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 2008년 12월 31일 개정에 의하여 「기상법(법률 제11905호, 2013.7.16. 시행)」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²⁵⁹⁾

2) 기상법의 주요 내용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해서는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5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위의 논문, 124면.

258)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59) 서비스 내용으로는 생활기상정보, 농업기상정보, 교통기상정보, 토목·건축기상정보, 수문기상정보, 스포츠·레저 기상정보, 제조·마케팅 기상정보, 수산기상정보, 관측·용역서비스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김재광,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 법제 연구」, 『경희법학』제44권 제2호, 2009 재인용)

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 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5조 제3항).

「기상법」 중에서 공공정보 상용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예보 및 특보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의 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항과 제2항,²⁶⁰⁾ 그리고 제14조 제1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²⁶¹⁾ 제15조의 특보의 통보²⁶²⁾ 등이 있다.

260)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61)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262)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또는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 기상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통보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의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제20조는 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 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청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는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3)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

향후 기상관련 분야에 있어서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즉, 기상자료의 실시간, 비실시간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개방 방식, 자료 단위 세분화 등을 통한 개방 범위의 확대 실시 조치이다. 그리고 웹기반의 실시간 데이터의 전송표준 포맷 및 개방 플랫폼 구축과 PC, 모바일 등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채널의 다양화 추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상분야 공공데이터 DB는 2013년 현재 22종 DB에서 2017년까지 수치모델시스템DB, 항공기상DB, 기후값DB, 태풍DB 등 7종 개방범위를 확대할 방침에 있다. 이는 2,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다.²⁶³⁾

기상기후정보 및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특히 농·수산, 유통, 레저, 에너지 관리 등 의사결정에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하는 분야 증가 및 기상기후정보를 통한 이익 창출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²⁶⁴⁾ 따라서 현재 「기상산업진흥법상」 기상사업자에게만 기상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점차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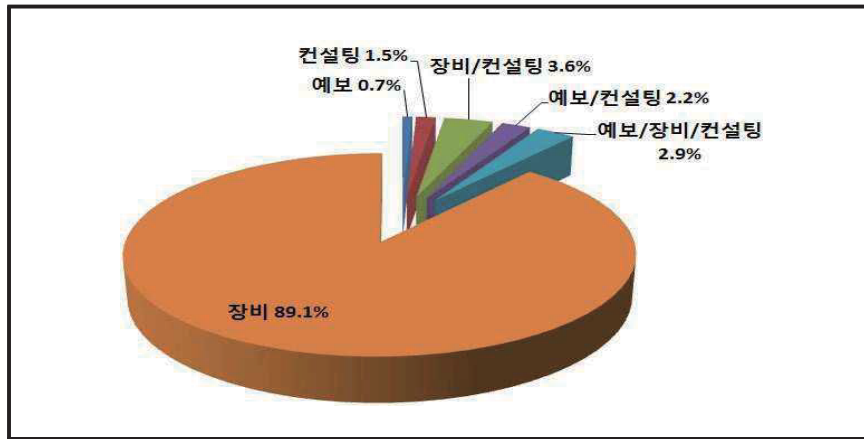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상산업에 있어서 1997년 민간기상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2012년 3월 현재 국내 기상관련 사업자 등록업체가 137여 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상산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로 연간 1,56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⁶⁵⁾

263)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9.17.

264) 기상기후정보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난방공사가 난방 공급량 예측으로 연간 30억원의 이익창출을 얻고 있으며, 보광 웨미리마트도 유통량 조절로 33%의 매출향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9.17. 참조).

26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mipa.co.kr>)

【국내 기상기업 업종비율(‘12)】



(출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2.3월 등록기준)

향후 기상기후산업이 단순 정보를 뛰어 넘어 기업경영 활동을 촉진 시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능케 하는 필수 정보로 각광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GDP의 23%, 캐나다는 25% 등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될수록 기상기후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건설·소매·금융업 등의 부문에서 기상기후 정보 활용으로 사회·경제적 가치가 연간 3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⁶⁶⁾

한국의 우수한 기상기술·장비와 기상인력 재교육 관련 기상기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기업과 정부주도의 교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기상관련 분야에 있어서 기상예보 산업에 있어서도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²⁶⁷⁾ 나아가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농업, 건설, 레저, 식품, 유통,

266) ‘기상·기후예측 정보의 산업적 활용 및 이익창출 워크숍’ 자료 참조, (2012.4.2., 서울 팔래스 호텔)

267) 예를 들어 기상정보와 타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상정보를 도로 유지보수, 노면상태 점검, 항로결정, 이착륙 결정 등 비행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음료·주류·빙과·냉난방기 등 계절상품 생

의류산업 등 타산업과 융합·확산한다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⁶⁸⁾

2. 정보산업분야 관련 법률

1) 주요 내용

정보산업분야의 관련 법률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먼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 전문인력의 양성, ▲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공간정보의 유통, ▲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8조에서는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산업체 원자재 구매, 생산 및 출고량 조절 등에 기상 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참조).
268) 기상기후산업을 타산업과 융합해 발생하는 신규 창출이 2012년 기준 396억원에 달함.(『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참조).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기관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개 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DB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복제·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 출력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상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중·수상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제2조 제1호),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그리고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산업에 속하는 측량업 및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그리고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하며(제2조 제5호),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그리고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제2조 제7호).

제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수립대상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제2호),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제3호),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제4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제5호),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제6호),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제7호),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제8호),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제9호),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0호) 등이다(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2항). 제6조는 공간정보의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되지 않은 정보인 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을 제외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제1항).

제7조는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간사업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공공간 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으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제2항). 제8조는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항).

제11조는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는 품질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3항). 그리고 제18조는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0조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제3항).

제19조는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제24조는 각종 정보의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기술정보·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

이와 같은 정보산업분야의 법률들은 다른 분야의 법률들에 비해 공간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제18조), 자료의 가공(제20조), 협력체계구축(제24조), 공간정보의 공개(제26조) 및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제2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간정보의 제공(제6조),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제7조),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제8조), 재정지원(제11조), 품질인증(제12조) 및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제10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제19조) 및 정보통신기업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제24조) 규정하고 있다.²⁶⁹⁾

향후 분야별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해 민간이 원하는 DB 종류, 제공 형태 등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3D 실내공간정보, 18종의 부동산 정보, 시설물 안전관리 DB 등 개방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을 기대된다.²⁷⁰⁾

또한 정보의 원활한 생성과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온 그간의 다양한 정보산업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시의적으로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²⁷¹⁾

269) 김재광, “공간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 법제연구”,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2009, 30면.

270) 세계 공간정보시장의 점유율 확대(2010년 3.3%→2017년 10%, 15조원)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참조)

271) 권현영 외, 위의 논문(주 117), 14면.

【DB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출처: 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과거 국민의 알권리보장 내지 행정권의 감시 차원에서 행해진 정보 공개 정책이나 정보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화정책은 지금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와 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정보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가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부분이 광범위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투자에 대한 설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 경제성 분석으로 적절한 사업대안을 선정하고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²⁷²⁾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는

272) 김기환, 윤상오, “공공정보화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연구: 기법과 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사전검토 및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교통분야

1) 주요 내용

교통분야 관련 법률로는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이 있다.

(1)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는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0.3, 191-197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공표하여야 한다.

제88조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항).

제90조는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 제1항에 따른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제2항).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제3항).

교통분야의 「교통안전법」 제25조가 단순한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라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는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제17조)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88조), 그리고 국가통합지능형 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제90조)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통정보의 상업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교통정보는 기초자료(raw date)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불특정다수의 전체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체 국민들이 소비층이며,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는 정보로서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⁷³⁾

3)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

현재 교통분야에서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2013년 9월 현재 234종으로 2016년까지 438종 데이터베이스가 확대 개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따라 2017년까지 2만명(C-ITS 6,000명, 대중교통분야 3,300명, 주정차분야 1,000명 등)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²⁷⁴⁾

273) 김재광, 위의 논문, 31-32면.

274) 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참조.

스마트폰의 보급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이용시 비용절감이 연간 약 6,175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교통정보 활용으로 교통혼잡비용도 연간 약 3조 6천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²⁷⁵⁾ 그리고 교통정보 접근성 및 민간 활용 확대를 통해 혼잡 감소, 교통물류 비용절감, 사고감소 등으로 연간 11조 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⁷⁶⁾

현재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노선정보, 정류소정보 등 54종의 교통 관련 공공데이터가 개방·운영되고 있다. 향후 버스·지하철·항공·항만운행 실시간 정보, 지역별 교통정보, 도로정보 등 355종의 공공데이터가 확대될 계획이다.²⁷⁷⁾

모든 교통시설 및 운행정보 연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정보 통합제공 등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교통정보가 개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⁷⁸⁾

아울러 교통정보제공업, 교통방송업, CCTV 정보 사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교통 정보를 관광, 물류, 의료, 부동산 산업 등 타 산업과 융합·확산을 통해 관련 경제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교통정보와 연계를 통하여 물류, 무역업 등에 활용하여 출·도착 시간 조정 및 물류란 해결에 기여한다든지, 교통정보를 비상 응급정보와 융합해 구급차, 소방차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타산업과 연계 산업의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통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가, 대체교통수단 업자 등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²⁷⁹⁾

275)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료 참조.

276) 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참조.

277)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2013.5, 12면.

278) 개방된 주차정보를 활용할 경우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주차장 조회, 예약 등) 구축 및 새로운 상품 개발이 가능(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참조).

279) 한국정보화진흥원, 위의 자료, 13면.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출처: 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4. 과학기술분야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계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⁰⁾

280)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제1항.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고,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공공정보이므로 상업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⁸¹⁾

과학기술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²⁸²⁾내의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2013년 60종에서 2015년에 68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²⁸³⁾

향후 NTIS 상에서 개방 데이터를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고, 범부처 과학기술정보가 창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중복 과제 방지, 유희·불용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약 5,490억 원 이상의 예상절감을 기대하며,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기반조성,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⁸⁴⁾

281) 김재광, “공간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 법제연구”, 『경희법학』 제44권제2호, 2009, 33면.

282)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17개 부처·청과 연계.

283) 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참조.

284) 「NTIS 구축사업 경제성 분석 201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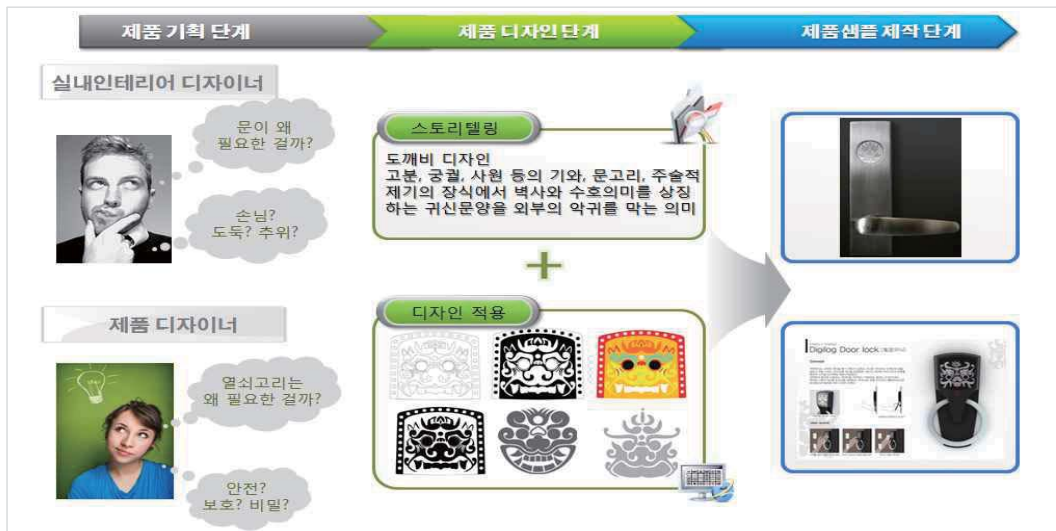
5. 문화관광분야

문화관광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은 2013년 19종에서 2017년 50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즉 문화관광분야는 공연전시, 관광, 문화유산, 문화산업, 도서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정보 중심의 개방체계 구축을 위해 기 개방중인 19개 DB 외에 2017년 까지 31개 DB를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하여 총 50개의 공공정보 DB 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²⁸⁵⁾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소개와 더불어 상품, 디자인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한국적 문화디자인 DB 개방 및 민간협업을 통한 산업적 활용으로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 증대가치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정보를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 예상된다.

【문화관광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출처: 안전행정부 2013.9.17. 보도자료)

285) 전통문양정보, 관광지 및 숙박·문화시설 정보 등 기 개방 중, 공연예술정보, 국악 정보, 체육행사 정보 등 31종 DB 추가 개방.(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9.17. 참조).

제 2 절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1. 공공정보 관련 법률 확대

국가 등의 공공서비스 구현은 공공정보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기 때문에 공공정보의 양과 질은 곧 공공서비스의 양질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적 환경도 진전되면서 공공정보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내지 행정권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인정되어 왔던 대국민 정보공개 정책이나 정보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화 정책은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강화와 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민간에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특히 입법자의 역할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²⁸⁶⁾

위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더불어 고용기회의 확대, 국가경쟁력의 향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²⁸⁷⁾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환경에서는 정책적 방향설정과 제도적 보완으로 그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기존의 법령체계에 따라서 정보권의 확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286) 권현영, 「정보권의 확장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법제논단』, 2013.4, 38면.

28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10, 73면.

입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권의 확대에 따라 국민들의 정보권은 정보공개 청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입법목적이 공공정보를 이용한 콘텐츠 생산성·활용성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방점이 찍힌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스마트 기술기반에 적합한 정보의 실시간 제공체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민간의 활용을 위한 정보 가공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²⁸⁸⁾

향후, 국민이 공공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공정보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재생산 및 활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관련 법제도 개선

공공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정보와 관련된 법제도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규제와 공공기관의 업무의 차이 또는 공공정보의 개념이나 공개범위의 애매모호함이 공공정보를 기초로 한 정보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현실과 미래의 비전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개선은 공공 부문이 시장경제의 경제체제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건전한 시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공공정보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²⁸⁹⁾

288) 권헌영, 『정보권의 확장 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법제논단』, 2013.4, 39면.

289) 이영대, 위의 논문, 61-62면.

이를 위해서 공공정보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어떤 정보가 개방 대상인 공공정보인지, 국민은 공공기관에게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하고 제공하면 되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입법론적 재고가 필요하다.

2013년 10월에 시행된「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련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 장애가 모두 해소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률은 기존의「저작권법」이나 「국유재산법」, 개인정보 관련법 그리고 「교통안전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기상산업진흥법」, 「통계법」 등 특화된 영역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던 법률과의 조율, 체계적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²⁹⁰⁾

공공정보는 그 자체의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산, 배포 또는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친다. 즉, 국가, 개인, 기업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는 넓혀가는 과정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의 활용 범위를 획득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장려하는 정책 및 이를 실현하는 규범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장되는 공공정보의 활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관련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²⁹¹⁾

3. 정부 3.0(스마트정부)

1) 개념

정부 3.0이란 객관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정형화된 형태를 지칭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또는 관계자들마다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290) 최진원, 위의 논문, 262면.

291) 이영대, 위의 논문, 62면.

정부 3.0은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단계에서 국민의 요구, 정부의 역할 등을 비롯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²⁹²⁾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유도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²⁹³⁾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방침이다.²⁹⁴⁾

국민의 6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는 정부 3.0으로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2011년 기준 생산유발액 23조 9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0조 7천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4만 7천명 창출이 가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²⁹⁵⁾

292) 한국정보화진흥원, 위의 자료, 13면.

293)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3면.

294) 2013년 4월 5일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3.0과 관련하여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언급하였다.(『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3면.)

295)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국회의원 진영, 김을동 의원실 발행, 2012.10.22., 5면.

2)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정보 활용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은 우선 민간의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정보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 한다.²⁹⁶⁾

이러한 공공정보는 교통정보, 지리정보, 교육 정보 등 국민들이 평상시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부터 개방·확대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공정보를 중심으로 확대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정보 개방 확대(안)】

구 분	현 행	확 대(안)
교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 노선정보, 정류소정보 등 5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지하철·항공·항만운행 실시간 정보, 지역별 교통정보, 도로정보 등 355종 ⇒ 모든 교통시설 및 운행정보 연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정보주변 시설정보 통합제공 등
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 해수면높이관측정보, 국가지반정보, 국가하천전자지도 등 7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된 GIS정보,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지리정보 등 500종 ⇒ 다양한 정보(교통·재난·기상·관광)와의 융·복합으로 앱 및 신규 서비스 창출

296)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은 ‘12년 1,005종에서 ’17년 6,400종으로 예상하며, 수요가 큰 변동데이터는 Open API로 별도 제공하도록 한다.(『정부 3.0』추진 기본계획, 2013.5.28. 참조).

구 분	현 행	확 대(안)
교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일반현황, 교육 과정 정보 등 8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평가정보, 입시 및 시험정보, 다양한 교재정보 등 533종 ⇒ 교육관련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로 신규시장 창출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체조사결과)

3)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으로 인한 2011년 생산유발계수²⁹⁷⁾는 1.774로 서비스업 1.661보다 높고 IT산업 1.892, 전산업 1.902보다는 다소 낮다. 즉,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생산유발계수 1.774는 국산최종수요 13조 5천억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23조 9천억원의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구 분	생산유발계수	국산최종수요 (단위: 백만원)	생산유발액 (단위: 백만원)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1.774	13,466,499	23,891,490
IT산업	1.892	90,617,192	171,450,897
제조업	2.074	853,163,413	1,769,694,843

297) 생산유발계수(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란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를 말한다. 이 생산유발계수를 미리 계산해 두면 최종 수요를 독립적으로 추정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생산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구별하여 대부분 승수 또는 레온티에프 승수라고도 한다.(NEW 경제용어사전)

구 분	생산유발계수	국산최종수요 (단위: 백만원)	생산유발액 (단위: 백만원)
서비스업	1.661	776,255,716	1,289,050,348
농림수산업	1.670	20,526,958	34,277,179
전력·가스 및 수도·건설업	2.120	206,433,165	467,556,675
전산업 평균	1.902	1,857,555,993	3,532,700,069

2011년 기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고용유발계수²⁹⁸⁾는 10억원당 10.943명으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에 따른 고용유발인원은 147,369명을 창출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0.943명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고용유발이 높다고 알려진 서비스업 11.760명, 전력·가스 및 수도·건설업 11.578명 다음으로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은 기존의 IT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6.531명을 훨씬 상회하는 10.943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²⁹⁹⁾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구 분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인원 (단위:명)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10.943	147,369

298) 고용계수는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고용계수는 낮아진다. 즉, 노동생산성과 역수관계에 있다. 생산량에 따라 노동투입량이 달라질 경우에는 평균고용계수와 한계고용계수를 구분하여, 전자는 생산 1단위에 대한 필요 노동량을 후자는 생산증가분 1단위에 대한 필요 노동량을 말한다. 생산량에 따라 노동투입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평균고용계수와 한계고용계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두산백과 참조).

299) 배성훈 외, 앞의 보고서, 56-57면.

구 분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인원 (단위:명)
IT산업	6.531	591,837
제조업	5.919	5,049,985
서비스업	11.760	9,128,904
농림수산업	6.175	126,759
전력·가스 및 수도·건설업	11.578	2,390,152
전산업 평균	8.992	16,702,465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으로 1인 창조기업은 향후 5년간(2013년~2017년) 약 43만 6천개의 창출이 가능하다. 1인 창조기업 연평균 매출 5,725만원을 감안할 때, 2012년 기준 해당부문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1인 창조기업의 수는 약 70,938개 정도 예상된다.³⁰⁰⁾

【향후 5년간 창출 가능한 1인 창조기업의 수】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단위:개)
1인 창조기업 수	75,903	81,217	86,902	92,985	99,494	436,501

정부 3.0은 국정운영이 정부 주도가 아닌 창의적인 국민 중심의 개방형 국정운영으로 변화가 핵심이다. 국정운영 결과만을 국민에게 알리던 과거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출발에서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국민과 같이 하는 것이 열린 정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300) 공공데이터의 연평균 가치 증가는 6%~18%로 간주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보수적으로 7%의 수치를 이용함. 이를 반영하여, 2012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4.069조로 추산됨.(진영, 김을동,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012.10, 57면).

즉, 정부 3.0 시대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개방과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일방향적 ‘서비스형 정부’에서 벗어나 개방형 국정운영을 위한 ‘플랫폼형 정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³⁰¹⁾

즉,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써 플랫폼 정부 전략을 통해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첫째, 핵심 플랫폼 정부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 및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중 활용가치가 높고 폭넓게 활용될 분야를 파악하여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 국민 불편해소·비용절감·안전 등에 필요한 공공정보 분야, 모바일·SNS 등 IT 활용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발굴하는 것, 시범사업을 통해 플랫폼 정부의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 등이다.

둘째, 공공부문 플랫폼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규칙, 플랫폼 참여촉진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플랫폼 참여자 증가와 서비스 다양화, 그리고 이용자 증가라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에 일정수준의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확산에 따라 수준 미달의 정보제공 서비스 양산, 참여자 과다로 인한 출혈 경쟁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 일정수준 참여 관리와 같은 대응책 역시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 플랫폼 산업분야를 발굴 및 육성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 다양한 관련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통신·전기자동차·홈오트메이션·스마트가전·분산형 재생 에너지 도입 같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스마트

301)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9면.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헬스 등의 인프라는 다양한 관련 산업 및 생태계 창출의 플랫폼으로 역할 할 것이다.³⁰²⁾

4) 디지털 공공정보 활용 확대방안

디지털 공공정보 DB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이용가치가 높은 중요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공공정보 개방·활용촉진,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국가지식 인프라확충에 기여한다.

디지털 공공정보를 DB화하여 스마트 시대의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높임으로써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혁명은 국민들의 공공데이터의 개방 욕구를 촉발하고, 개방가치를 증폭시킨 핵심요인이 되었다. 해외 선진국들도 2000년대 초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개방하기 시작한 시점은 스마트 혁명이 촉발된 2009년 이후에 가능하였다.

스마트 시대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공공데이터의 활용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3자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

구 분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투명성 강화 • 정부운영 예산절감
민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국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활편의 향상 • 정부정책 참여기회 확대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생산·공급, 활용의 주체로서 스마트 환경에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의 출발 모체가 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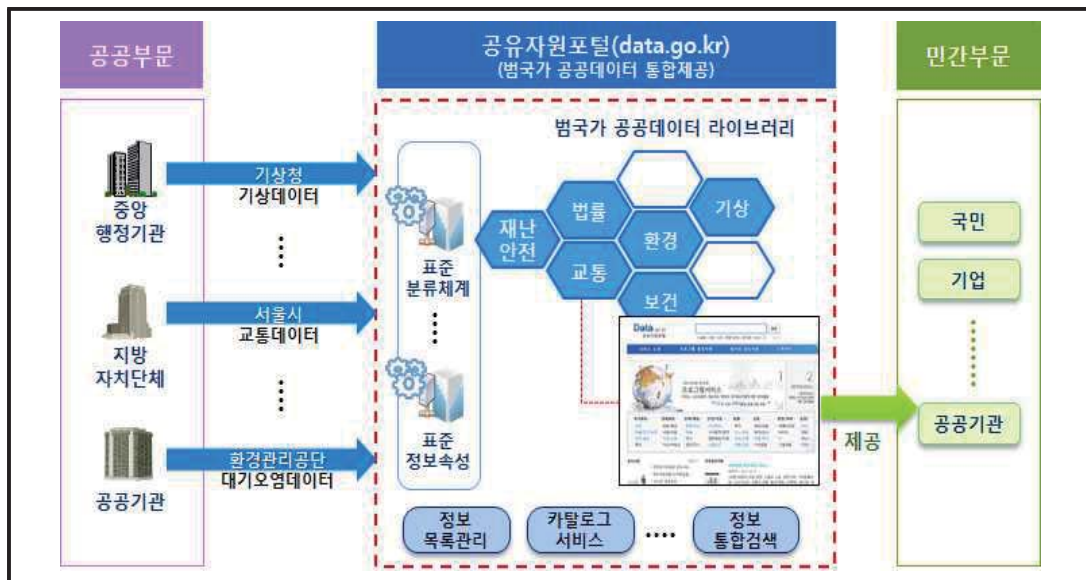
302) 류현숙, 앞의 책, 353-354면.

정부운영의 전반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의 소통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국민이 공공데이터간 또는 민간데이터간 매쉬업(Mash-up)을 통해 새로운 정부서비스가 만들어져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

기업들 또한 저비용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쉽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져 특히, 1인 창조 기업, 벤처·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 기조에도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혜택의 대부분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환경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와 교통서비스, 기상서비스 등 양질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윤택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³⁰³⁾

【공유자원포털 역할과 기능】



(출처: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40면 재인용)

303) 배성훈 외, 위의 보고서, 24-26면.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더 많은 종류의 공공데이터를 개발하여 DB화하고, 분야별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해 민간이 원하는 DB 종류, 제공 형태 등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장 결 론

현재 공공기관은 사회, 경제, 지리, 기상, 교통, 관광,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며 각종 공공정보를 수집, 생산 그리고 분배하고 있다. 공공정보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화를 위해 디지털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이러한 디지털 공공정보의 재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잠재력을 현재화하고 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정보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공정보 개방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의지는 미약한 수준이다.

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활용하여 앱 개발을 비롯한 경제생활 등 비즈니스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현재 정부도 공공정보를 민간개방으로 활성화시키고, 정부 3.0 구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경제적 가치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공정보의 활용 분야 또는 모바일 앱 개발 및 매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정부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을

공공정보의 개방·공유·활용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³⁰⁴⁾

디지털 공공정보는 IT 산업발전과 더불어 콘텐츠 산업에서 있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공통자원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에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인터넷이 오락·문화콘텐츠를 넘어 생활·문화콘텐츠로 확대됨에 따라 교통·기상·지리·통계 등 공공정보의 활용 가능성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공공정보를 정부의 행정적 목적에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디지털 콘텐츠의 창의적 발전을 위한 개방형 공유자원(open common resources)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³⁰⁵⁾

공공정보는 항상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로 살아 움직이며 사회를 변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건전한 정보화 사회는 그 사회의 수많은 지식정보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정보는 국민 모두를 보다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다가올 미래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정보의 유통 시스템을 확립하여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04) 김영철 외, 위의 논문, 46면.

305) 황주성 외, 위의 논문, 130면.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기환·윤상오, “공공정보화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연구: 기법과 제도의 개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0.
- 김영철·신신애·권영일,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공공정보 개방·활용 플랫폼 정책 연구”, 『정보과학회지』 특집원고,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김우식,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 활성화 사례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1.
- 김재광,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 법제연구』,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2009.
- 김준모, 『행정정보서비스의 상업화 가능성과 그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2002.
-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 권현영 외, 『공공정보 민간 제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입법 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권현영, 『정보권의 확장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법제논단, 2013.
- 박재현 외,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 박재현, 『공공정보 활용에서의 정책집행 게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방민석 외, 『해외 공공자원의 상업적 활용사례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2005.

참 고 문 헌

-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국회의원 진영·김을동 발행, 2012.
- 이영대, “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연구: 미국 내 각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보고서, 2006.
- 이현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관한 법제도 연구”, 「엔터테인먼트법」, 제5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 최정환, “public domain 의 새로운 이해”, 「계간 저작권」, 제69호, 한국 저작권위원회, 2005.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 관련 해외 정책 사례 연구」, 2004.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가 디지털 경제를 움직인다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2007.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2010.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및 파급효과 연구」, 2006.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998.
-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2012 국가정보화백서」, 2012.

- 한국전산원, 「공공지식정보자원 서비스유료화 적용방안 연구」, 2002.
- 한국전산원, 「공공 지식정보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방안 연구」, 2003.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11.12.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해외 공공정보자원의 상업적 활용사례와 국가지식 정보자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 연구보고 05-18. 2005.
- 허필선 외,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과급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8권 제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8
- 홍필기 · 윤상오 · 방민석, “공공정보자원의 상업화 모델 개발 및 적용 방안”, 「정보화정책」, 제14권 제3호, 2007.
-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외 국 문 헌

- Directive 2003/98/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Gellman, Robert, “Foundations of U.S. Governm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ccess to and Ownership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Vienna, December 7th, 2001.
- UK Report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10.
- OECD, Public Sector Information, DSTI/ICCP/IE(2005)2/Final.
- 「新たな情報技術戦略」、官邸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平成22年5月11日).

기 타 자 료

권현영 외, 「정보공개법을 통한 행정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열린정부의 심화」, 한국행정학회, 2012 동계학술대회, 『민생과 치안』 발표 자료.

김을동 의원실,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백서」, 2011.

국회의원 진영, 김을동,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카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2012.10

류현숙,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6.

안정행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 보고서」, 2013년 6월.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9.17일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8년 공공정보 활용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08.7.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NIA VII-RER-11100, 2011.12.

NTIS 구축사업 경제성 분석 2011.12

日本經濟新聞、2013.6.27일자.

웹사이트

<https://www.data.go.kr/#/L3B1YnMvcG90L0lyb3NJbnRyb0luc3R0JEBeMDYxbTY>

<http://www.cendi.gov/publications/04-8copyrifht.html#317>

<http://www.infoday.com/searcher/apr09/Klein.shtml>

<http://freegovinfo.info/node/1698>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transparency_and_Open_Government.

<http://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legislation/directive-and-regulations.htm>

www.bunka.go.jp/jiyuriyo

<http://infovegan.com/2010/08/09/how-did-weather-data-get-opened>.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co.kr>)

부 록

공공정보 OpenAPI 추가개방(22종)

【신규-10종】

서비스명	제공기관	주요 서비스 내용
국가통계정보	통계청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고용노동, 경기물가, 인구가계지표 등 국 가통계정보 및 출입국 관광객 등 관광통 계정보
국내관광정보	한국관광 공사 제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관광지, 숙박, 음식점, 쇼핑 등 상세 관광정보 (제주관광정보, 전북음식정보, 전주교통정보 추가)
농수축산 가격정보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전국의 농·축·수산물 실시간 가격정보, 전문가격분석정보
노인일자리정보	노인인력 개발원	유형별, 지역별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교 육정보
정보화마을정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친환경 및 쇼핑상품정보, 체 험상품정보
나눔포털정보	행정안전부	나눔포털의 기부·후원·자원봉사, 나눔 단체정보
국가생물종정보	국립수목원	범정부차원의 녹색산림생물자원정보
생활기상정보	기상청	기상특보, 동네예보, 주간예보, 태풍·지 진정보
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 박물관	전승행사, 의례놀이 등 세시풍속과 민속 신앙정보
도서관위치, 학술정보	KISTI	전국 대학 및 전문도서관 위치정보, 학술 지 검색정보

【연계-12종】

서비스명	제공기관	서비스내역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청	한국, 미국, 유럽 등의 산업재산권정보(특허, 실용신안 등)
나라기록물정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물정보시스템의 기록물검색 및 토픽정보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현행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판례/해석례
항공운행정보	한국공항공사	실시간 항공기 운항정보
산악안전정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안전사고대응(대피소 등) 및 산행정보
농업기술정보	농촌진흥청	작목별 농사기술, 농업기술정보
도서및디브리리정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공공도서관 소장자료
토지이용규제행위제한정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행위명, 행위제한 법령정보, 행위제한 가능정보
한국전통소리문화정보	전라북도	국악기, 판소리 등 전통음악정보
국가자연사연구정보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자연사연구 종/표본/관찰 및 생태정보
주민서비스정보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시군구 주민서비스 및 시설정보
전주시버스·문화정보	전주시	전주시의 공연/행사/전시정보 및 버스정보

2013 공공정보 개방 목록(총1,698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	강원도(본청)	관광통합시스템	57	경기도 (본청)	경기도교통DB시스템
2		그린투어리즘 포털시스템	58		경기도농촌체험관광
3		백두대간 자연 생태공원	59		경기도사이버도서관
4	강원도_강릉시	강릉100년사	60		경기명산27
5		강릉시보	61		도로소통정보
6		강릉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62		도로영상정보
7		강릉시의회 회의록	63		버스정보 GIBS
8		강릉시정뉴스	64	경기도_고양시	고양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its.goyang.go.kr)
9		강릉시청 축구단 포토갤러리	65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0		강릉웹진	66	경기도_과천시	교통정보시스템
11	공무국외연수보고서	67	버스정보안내시스템		
12	공중위생업소대장관리	68	보건소 홈페이지		
13	모범(으뜸)음식점 관리	69	청소년수련관DB		
14	보도자료	70	경기도_광명시	BIS (버스운영정보)	
15	세계문화유산 강릉단오제 및 한반도 단오 문화 종합정보	71		도로시설물도	
16	세입세출예산서	72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DB구축	
17	솔향강릉계간지	73	시 대표 홈페이지		
18	수의계약내역	74	경기도_광주시	기록물 DB	
19	시험정보	75	경기도_군포시	도서 비도서 자료	
20	식품위생업소대장관리	76		도서관 문화행사 자료	
21	식품진흥기금관리	77		평생 교육기관 정보	
22	식품품목제조관리	78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23	역대시장	79	경기도_김포시	김포시역사기록물	
24	인사정보	80	경기도_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회의록	
25	직원정보	81	경기도_동두천시	방법용CCTV설치	
26	강원도_속초시	속초시 행정포털 DB	82	경기도_부천시	부천시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27	강원도_영월군	영월군의회 회의록	83	경기도_수원시	IT 융합 행정서비스	
28	강원도_원주시	원주시 홈페이지(복지시설)	84	경기도_시흥시	미디어시흥	
29		원주시 홈페이지(식품/위생업체)	85		시흥방송국	
30		원주시 홈페이지(예산결산)	86		시흥시 홈페이지	
31		원주시 홈페이지(주요통계)	87		포토시흥	
32	강원도_인제군	인제군민박협회	88	경기도_안산시	안산시 자동강우_AWS 수집	
33	강원도_정선군	정선군 홈페이지	89	경기도_안성시	KLIS	
34	강원도_철원군	U-철원 통합 홈페이지	90	경기도_안양시	안양시포토갤러리	
35	강원도_춘천시	IPT 구축 현황	91	경기도_양주시	교통체계정보 UITS	
36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현황	92		도로명 주소 관리 서버	
37		의회 회의록	93		도서관리 서버	
38		청소년활동 통합시스템 구축	94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39		춘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95		미디어시정 홍보관	
40	강원도_태백시	도로조명시설물관리	96		버스정보 관리 시스템	
41		서지(장서)정보	97		사진서버	
42		태백시의회회의록	98		양주시 홈페이지	
43	강원도_홍천군	홍천군 모바일 웹	99			주정차 관리 시스템
44	강원도_화천군	월하이태극문학관	100		경기도_양평군	양평군 가로등/보안등 관리시스템
45		화천군 관광정보(맛집)	101	양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46		화천군 관광정보(숙박)	102	양평군 용문산 휴양림 홈페이지		
47	강원도_횡성군	회의록	103	양평군 홈페이지		
48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홈페이지	104	양평도서관 홈페이지		
49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기관홈페이지	105	양평일자리센터		
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DB	106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51		병원평가정보	107	경기도_여주군		여주군 홈페이지
52		보건의료동향	108	경기도_연천군		연천군 홈페이지
53		통계자료실	109	경기도_오산시		행정주제도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54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등급분류결정 게임물 정보)	110	경기도_용인시	도서DB	
55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전자도서관	111	경기도_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56	경기도(본청)	경기누리맵-산책로정보	112	경기도_파주시	사이버박물관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13	경기도_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169	경상남도_사천시	사천시 채소 재배 현황	
114		여성회관 수강생모집정보	170		사천시 홈페이지	
115		평택 생활지리정보	171		사천시사 홈페이지	
116		평택시 문화재DB	172		생활정보넷	
117	경기도_포천시	대형폐기물관리 DB	173		생활정보넷(체육시설 예약)	
118		포천시 홈페이지 DB	174		실내수영장 홈페이지	
119	경기도_하남시	도서관 목록(홈페이지 제공)	175		향우회 홈페이지	
120	경기도_화성시	강유량정보	176		경상남도_산청군	산청농촌체험
121		계약(입찰)정보	177	산청한방약초		
122		공고/고시정보	178	약초생산이력정보		
123		교육정보/평생학습	179	한의학박물관		
12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정보	180	경상남도_양산시	양산시 통합방재시스템	
125		민방위/전시국민행동요령	181		경상남도_진주시	거래정보시스템
126		민원서식 자료실	182			숙박 음식 쇼핑
127		사업체조사보고서	183			여행정보(교통/여행정보)
128		안내/홍보	184			진주관광
129		예산 및 재정현황	185			진주관광(문화관광_)
130		정류소안내관광관 정보제공	186			진주관광(문화유산)
131		정보화마을	187			진주관광(축제체험)
132	화성시 통계연보	188	진주시 복지정보 홈페이지			
133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업농업 정보시스템	189			진주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13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정보	190	진주시-시니어 무료 정보화교육 정보		
135		홈페이지	191	경상남도_창녕군	우포늪 사이버생태공원	
136	경기도사공사	공사 홈페이지	192	경상남도_창원시	개인서비스업114	
137	경기문화재단	공고 공모	193		내서농산물도매시장-농산물 거래 정보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38		교육정보	194		버스정보시스템
139		전시정보	195	경상남도_통영시	통영물-웹진
14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홈페이지	196		통영섬여행 홈페이지
141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197	경상남도_하동군	강우량정보DB
142		홍보관 홈페이지	198	경상남도_합천군	벚꽃마라톤
143		각종 공지사항	199		역사자료
144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설비 현황	20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면허관련)
145		직원안내	201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무인카메라)
146		행정정보공개목록	202	경상북도(본청)	투자유치 산업단지현황
14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시설 현황	203	경상북도_경산시	SNS 서비스
148		공공시설안내	204		경산시버스정보시스템
149	경상남도(본청)	공공정보관리시스템	205		박물관 유물정보
150		모바일 공개협업도정 구축	206	경상북도_경주시	경주문화관광
151		항만물류 종합정보DB	207		경주시대표홈페이지
152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정보	208	경상북도_군위군	군위군 농기계 임대은행
153	경상남도_거제시	도서정보	209		기관홈페이지
154		연담마을	210	경상북도_상주시	농업기술
155	경상남도_거창군	거창군사이버농원	211	경상북도_성주군	성주군 홈페이지
156		남해 유배문학관	212		성주문화관광
157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213	경상북도_안동시	안동음식문화
158	경상남도_남해군	남해군 보건소	214		전통문화콘텐츠자료
159		남해군 특산물	215	경상북도_영덕군	공연정보
160		모바일 웹 사이트	216		문화강좌정보
161		문화관광	217	경상북도_영양군	산촌생활박물관소장자료
162	경상남도_밀양시	버스정보시스템(BIS)	218		영양군기상관측현황
163		소장유물도록	219	경상북도_영천시	영천보현산별빛포도정보화마을
164	경상남도_사천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220	경상북도_예천군	의회회의록 DB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65		사천물 홈페이지	221	경상북도_울릉군	개별주택가격공시	
166		사천시 과수 재배 현황	222		고시 공고	
167		사천시 농산물 생산량	223		민원 도우미	
168		사천시 사이버항공우주센터 홈페이지	224		입찰정보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225	경상북도_울릉군	자치법규	281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유전자원 정보	
226		재정현황	282		그린로드DB	
227	경상북도_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	283		농기계정비	
228		울진군청홈페이지	284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한국음식문화	
229		울진금강소나무숲길	285		농작물 병, 해충, 잡초정보 (작물별 병해정보)	
230		울진위터피아 페스티벌	286		농작업 안전관리 핸드북	
231		울진친환경로하스쇼핑몰	287		농촌어메니티지원	
232		죽변면도서관	288		누에유전자원 정보	
233		경상북도_청도군	홈페이지_행정정보		289	뉴스레터
234		경상북도_청송군	대표홈페이지		290	미생물 유전자원 정보
235	문화관광		291		배추 유전체 정보	
236	청정특산물		292		식물유전자원 정보	
237	경상북도_포항시	포항서비스정보	293		유기농정보	
238		포항시홈페이지(공지사향)	294		토양환경지도	
239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시 고용동향	295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240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29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 사전
241	경찰청	UTIS 교통정보 (www.utis.go.kr) (mutis.go.kr)	297	국립방재연구원	재난안전교육자료	
24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발간물DB	298		홈페이지	
243	관세청	수출입 통관정보	299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정보DB	
244		품목분류 사례정보DB	300		산불정보DB	
245	광업등록사무소	광업권행정처분공지	301		표고품종 DB	
246	광주과학기술원	GIST 등록특허정보	30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출원DB	
247	광주광역시_광산구	광산구_광산구 살림방	303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분양 기준 시스템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248		광산구-문화관광	304		기관홈페이지
249	광주광역시_남구	남구문화관광	305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250	광주광역시_동구	광주서석영어센터	306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원 안장자 정보
251		금남벨리종합정보시스템	307	국립소록도병원	기관홈페이지
252		동구 국민체육센터	308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 DB
253		동구 보건소	309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정보시스템
254		동구 어린이구청	310		해양생물종 정보
255		문화의 거리	311		해양수산관련 고서원문 DB
256		추억의 7080충장축제	312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정보센터
257		평생학습도시	313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DB
258		북구5대전문거리	314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DB
259		광주광역시_북구	북구평생학습센터	31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60		일곡도서관	316	국립종자원	식물신품종보호DB
261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	317		종자수입생산판매신고
262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318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국가생물자원 통합 DB
263		홈페이지(유실물)	319		전국 과학전람회
264	광주보호관찰소	기관홈페이지	320		전국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26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321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아카이브
266	교육과학기술부	간주린 교육통계	322		국립극장홈페이지
267		기술부	교과부 디지털도서관	323	국립중앙도서관
26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 유통정보	324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
26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시스템DB	325		전시 행사 교육정보
270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 안전사고 대응 및 산행 정보 DB	326		소장품검색
27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홈페이지	327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272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328	국립춘천병원	동물유전체정보
273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329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274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문헌 자료와 해제	330	국립해양조사원	실시간 연안정보
275		디지털 한글박물관 한글 문헌 통합 정보	331		요트·낚시정보도
276		한국수화사전	332		조위관측기록지DB
277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자원정보	333	국립현대미술관	비도서자료서지 DB
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GAP)정보	334	국립환경과학원	국토생태탐방포털홈페이지
27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	335		물환경정보시스템
28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정보	336		생태자연도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337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393	국토해양부	물류시장운입 정보
338		한국의 외래생물 종합검색 시스템	394		물류정책정보
339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KISChem)	395		물류통계정보
340		환경보건자료통합관리시스템	396		민원서류
34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검정정보	397		민원접수/처리현황
34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기관홈페이지	398		보급자리 공고 DB
343	국무총리실	규제등록DB	399		산업입지 정보
34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 안내	400		선박위치정보 (선사제공)
34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질병정보	401		세계 공항 정보
346	국민권익위원회	전화민원접수현황	402		수자원정보관리
347	국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동영상	403		수치지형도
348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홈페이지	404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
349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자료	405		실시간 선박 운항정보
350	국방과학연구소	전자도서관	406		실시간 항공운항정보
351	국방기술품질원	간행물정보	407		심의결과보고서 정보
352		과제정보	408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정보
353		행사정보	409	연안 이미지 /동영상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354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국방일보	410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연안정보도	
355		국방홍보원-국방저널	411		연안정책정보	
356		국방홍보원-국방화보	412		위험화물검사정보	
357	국사편찬 위원회	승정원일기	413		이전대상 공공기관 정보	
358		역사정보통합시스템	414		자동차 리콜 정보	
35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15		자동차통계정보	
360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416		전국 부동산정보	
361	국토지리 정보원	공공측량 사업현황 정보	417		정비사업	
362		지명정보	418		주제도 정보	
363	국토해양부	DGPS 데이터 정보	419		철도산업 기술 DB	
364		ITS국가교통정보화센터	420		철도안전 통계 DB	
365		My 홈 온실가스 배출정보	421		철도통계정보	
366		RFID 추적 정보 (차량)	422		토석정보	
367		RFID 추적정보 (컨테이너)	423		토지이용규제정보DB	
368		UFID정보	424		표준수문 DB	
369		갯벌정보시스템	425		하천기본계획보고서	
370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정보 (용도별, 구조별 등)	426		항공정보업무 DB	
371		건설CALS 통계정보	427		항공화물추적 정보	
372		건설사업관리 공시업체 정보	428		항만물류정보	
373		건설사업관리자DB	429		항만운영정보	
374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	430		해양 안전 DB	
375		건설업체DB	431		해양조사정보	
376		건축물대장	432		해양지리정보	
377		건축인허가 정보	433		해양환경 관련 정보	
378		공시지가	434		해외건설 종합 정보	
379		교통량 통계 정보	435		해외철도정보	
380		국가공간정보	436		해운항만통계정보	
381		국가교통DB	437		화물운송스케줄 정보	
382		국가교통통계 정보	438		국회도서관	학사행정(교육정보)
383		국가하천전자지도	439			모바일웹(도서자료)
384		국토지반정보	440			모바일웹(비도서자료)
385		국토해양부 통계 정보	441			모바일웹(학술기사)
386		대중교통 정보	442			모바일웹(학위논문)
387		도로및시설물정보	443	서버(도서자료)		
388		도로표지 정보	444	서버(비도서자료)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389		도면 정보	445		서버(인터넷자료)
390		도시계획고시현황	446		서버(학술기사)
391		도시재생 연구성과 DB	447		서버(학술지)
392		독도해양 과학자료 DB	448		서버(학위논문)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449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정보시스템	505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	해외 수출작업장
450		국회 영문홈페이지	506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홈페이지
451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	507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홈페이지
452		국회방송 홈페이지	508	농촌진흥청	국가농업과학기술
453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509		농산물소득정보
454		국회홈페이지	510		농업과학기술도서(농서남북)
455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511		농촌진흥청(농약품목등록정보)
456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512	농촌진흥청-우수농업경영체DB	
457		예결산정보시스템	513	대검찰청	영상방송콘텐츠
458		위원회 홈페이지	514		형사지식DB
459	회의록시스템	515	관광정보		
460	국회입법 조사처	입법조사기반DB	516	대구광역시 (본청)	교통종합정보
461	금강홍수 통제소	금강수문DB	517		버스정보시스템
462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센터	518	대구광역시_ 남구	공약사항관리
463		국가지진 종합정보시스템	519		대구남구의회의회의록
464		국가지진 지진해일 관측환경 정보	520		조례규칙
465		기상 예특보 자료	521	대구광역시_ 달성군	달성군의회의회의록 DB
466		동네예보	522	대구광역시_ 동구	공약사항 관리
467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정보	523	대구광역시_ 북구	주민정보화교육
468		지진조기경보	524	대구광역시_ 서구	구청장공약사업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469		태풍정보	525	대구광역시	문화재정보	
470	기술표준원	IEC표준	526	중구	홈페이지	
471		ISO표준	527	대구지방 경찰청	기관홈페이지	
472		KOLAS 공인기관	528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홈페이지	
473		TBT 종합정보허브	529	대의경제 정책연구원	연구자료	
474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	530	대전광역시 (본청)	대전관광포털	
475		색동코리아(한국표준색표집)	531		디지털 항공사진 자료	
476		우수재활용제조제품(CR) 인증	532		수치지형도 DB	
477		인증제도	533		의회 DB	
478		정부기술기준	534		의회회의록시스템DB	
479		표준색이름 디지털팔레트	535		표준자료관리(KOLAS II)시스템 DB(한밭도서관 도서DB)	
480		한국산업표준(KS)	536		항공영상관리시스템 DB	
481		한국표준색이름 통합본	53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82		기초전력 연구원	전력성행기술 과제	538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48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539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홈페이지	
484		공공기관 예산현황 정보	540		뿌리공원홈페이지	
485		국고채발행계획	541		중구노인홈페이지	
486		시사경제용어사전	542		중구어린이홈페이지	
487		연기금투자폴 홈페이지 (2)	543		중구여성아동홈페이지	
488		주요경제지표	544		중구청소년홈페이지	
489	김대중컨벤션 센터	행사일정(홈페이지)	545		중구평생학습센터	
490	낙동강홍수 통제소	수문DB	546		효문화마을	
491	남부지방산림 관리청	기관소개 DB	547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공사	노선도
492		산림문화정보	548			노선도(운행시간)
493	녹색사업단	해외 산림 투자실무 가이드	549	대전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화장데이터
494		해외 주요 조림수종 가이드	550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495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가격유통정보DB	551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	GEP
496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552		투자유치 DB
497		생명자원통합DB	553		해외투자 통계정보
498		이력추적시스템	554		해외투자정보
499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냉동선어류정보	555	대한민국 예술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DB
500		수산물 수출입검사정보	556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501		수산물 수출입검역정보	557	대한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 대회행사 정보
502		수산물 인증품정보	558		월간KOSAD
503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 스템	559		장애인체육 종목안내
504		종합 수의과학 지식정보 DB	560	대한체육회	국제종합경기대회 결과자료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561	대한체육회	기타대회 결과자료	617	산림청	산림통계
56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	618		산불통계
563	동북아역사 재단	동북아역사자료DB(동북아역 사넷)	619		산사태예보
564	동해지방해양 경찰청	방파제 갯바위 관리	620		산사태예측정보
565	문화재청	문화유산 DB	621	산업기술 연구회	산업기술연구정보 서비스(IRIS)DB
566		문화재청 규제개혁	622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ISTANS(산업통계분석 시스템)
567	문화체육 관광부	DB 산업현황	623	서울메트로	지하철 시간표
568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624		지하철 역정보
569		저작권위탁관리DB	625		지하철 요금정보
570		전자브리핑(e-브리핑)	626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국도ITS(도로교통정보시스템)
571		콘텐츠분쟁조정건수	627	서울지방 항공청	관사 및 관용차 운영현황
572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628	모의비행훈련장치 현황		
573	방위사업청	전자입찰정보	629	서울특별시 (본청)	SETEC
574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630		smart-서울포럼
575		범죄피해자보호지원	631		TBS 교통방송
576		지능형입법지원시스템	632		TBS 교통방송(영문)
577	법원도서관	문헌DB	633		Visit Seoul 웹사이트
578	법제처	국가법령DB	634		Visit Seoul 웹사이트(영문)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579		생활법령	635		Visit Seoul 웹사이트(일문)
58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통계DB	636		Visit Seoul 웹사이트(중문)
581	부산광역시 (본청)	ITS_BIKE[게시판]	637		Visit Seoul 웹사이트(중문2)
582		ITS_BIKE[자전거사용정보]	638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
583		버스정보	639		강북 여성인력개발센터
584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640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
585		유통정보시스템	641		건설알람이
58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상수도 수질	642	
587	부산광역시_ 금정구	구 홈페이지	643		교통위반 단속조치 통합 홈페이지
588	부산광역시_ 기장군	군 홈페이지	644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589	부산광역시_ 남구	홈페이지	645		국제물류주산업
590	부산광역시_ 부산진구	영상회의록	646		남부 여성발전센터
591		음성회의록	647		남산골 한옥마을
592		홈페이지 프로필	648		남산예술센터
593		회의록	649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
594	부산광역시_ 사상구	사상의맛	650		노인복지시설정보
595		정보화교육	651		녹색장터
596	부산광역시_ 사하구	다대도서관	652		농업기술센터
597		다대포꿈의낙조분수	653		다산콜센터
598		사하구 평생학습관	654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599		사하문화관광	655		대학행정정보시스템
600		을숙도문화회관	656		도서관 공간정보
601	부산광역시_ 서구	서구 홈페이지	657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602	부산광역시_ 연제구	도서목록	658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603		문화관광	659		문화복덕방
604	부산광역시_ 영도구	영도구 홈페이지	660		북부여성발전센터
605	부산광역시_ 중구	홈페이지	661		북서울 꿈의숲
606	부산광역시_ 해운대구	해운대구 홈페이지	662		북촌 한옥마을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607	부산지방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	663		서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608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동포사랑TV	664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609	산림조합 중앙회	단기소득 임산물	665		서부 여성발전센터
610		목재수집/가공	666		서울 글로벌 센터
611		자연휴양림 안내	667		서울 도시계획 포탈
612		조림수종	66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613		직거래장터	669		서울교통정보센터
614		특화품목 재배방법	670		서울대공원 동/식물 정보
615		산림청	산림사업법인통계	671	
616	산림산업해외시장 정보		672		서울디딤돌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673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메트로	729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특별시 토지정보시스템
674		서울문화재단	73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영문)
67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73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일문)
676		서울시 GIS 포털 시스템	73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중국어)
677		서울시 문화재 정보	73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중문)
678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73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679		서울시 종합 생태 정보	735		서울품물시장
680		서울시 창작공간	736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681		서울시 체육정보 통합사이트	737		석면정보관리시스템
682		서울시 화장실정보	738		성동 여성인력개발센터
683		서울시립교향악단	739		송파 여성인력개발센터
684		서울시립미술관	740		수도박물관
685		서울시립미술관(영문)	741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686		서울시립미술관(일문)	742		영문표기사전
687		서울시립미술관(중문/간체)	743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688		서울시립미술관(중문/번체)	744		용산인력개발센터
68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745		월드컵공원 및 난지도 관련 내용
690		서울시설공단(청계천)	746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691		서울시설관리공단 운영 정보	747		전통시장
692		서울시온라인여론조사	748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693		서울애니메이션센터	749		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
694		서울역사박물관	750		중부 여성발전센터
695		서울역사박물관(영문)	751		클린재정공개시스템
696		서울역사박물관(일문)	752		판매용서울시간행물
697		서울역사박물관(중문)	753		하이서울페스티벌 2010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698		서울연극센터	754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699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755		한강교량 안전감시시스템
700		서울의 공원	756		한강시민공원 GIS 센터
701		서울전자설문 e-poll 정보	757		한글사랑서울사랑
702		서울종합방제센터	758	서해지방해양	레저활동허가구역
703		서울통계	759	경찰청	정보공개
704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760		국가위험물정보 시스템
70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761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정보
706		서울특별시 기후대기환경정보	762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대비 정보
707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763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통계
708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764		국가재난정보센터 종합상황실 정보
709		서울특별시 보육시설 공유서비스	765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정보
710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766		비치도서 관련 자료
7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767		수용관련 자료
712		서울특별시 세금/재정/계약	768	수원보호	수용관련 자료
71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769	관찰소	수용관련자료
714		서울특별시 수해예방정보	770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1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771		정보목록
716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772		상점가 현황
717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 정보넷	773	시장경영 진흥원	시장경기동향조사
718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774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현황
719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775		식품안전정보(식품나라)
720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776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허가
721		서울특별시 자율점검시스템	777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722		서울특별시 자전거 홈페이지	778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
723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779		의약품 특허정보
724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780		안전성약리 DB
725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781	식품의약품	약물유전정보 DB
726		서울특별시 종합자료관	782	안전평가원	임상시험지식 DB
727		서울특별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783		통합독성유전체데이터베이스(Korea Toxicogenomics Integrated System)
728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84	신용보증 기금	홈페이지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785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통계	841	울산지방 경찰청	울산경찰통계(폭력시위)
786	에너지경제 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 템(KESIS)	842		울산청규척자료
787	에너지관리 공단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	843	울산항만 공사	울산항 항만운영정보
788		자동차연비등급	844	의정부보호 관찰소	기관장 업무추진비
78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통합 업무관리시스템 (i-돌봄)	845	인구보건 복지협회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유수유/ 착유실 리스트
790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	846	인천광역시	인천사이버교육센터
791	여수광양 항만공사	항만 용어사전	8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구축
792		항만 지식창고	848		기관정보
793		항만 통계	849		남동구자원봉사센터
794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입주기업 및 기관 현황	850		남동문화원
795	영산강홍수 통제소	수문DB	851		노인인력개발센터
796	영상물등급 위원회	등급자료조회	852		우리동네 도서관
797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박스오피스정보	853		평생학습센터
798		영화정보	854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799	예술의전당	자체매표시스템	855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관광 정보
800	외교통상부	공관장 이력서	856	인천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공단 새소식
801		국제기구 공식정보	857		공단 채용정보
802		대한민국 다자조약정보	858		민원상담
803		대한민국 양자조약정보	859		입찰정보(1인 견적소액 수의 계약)
804		법령정보	860		입찰정보(개찰결과)
805		외교통상자료실	861		입찰정보(기타공고)
806		재외공관/외교관계 수립현황	862		입찰정보(나라장터)
807		재외공관 재외공관 설치현황	863		입찰정보(수의계약공개방)
808		재외동포단체현황	864		입찰정보(온비드)
809		재외동포현황	865		행사 안내
810		주한공관정보	866	인천교통 공사	BIS(버스정보시스템).BIT(버스매니 저시스템)
811	해외안전여행	867		버스이용정보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812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DB	868		인천지하철 역사별 이용정보 및 열차정보
813	우체국금융개발원	기관홈페이지	86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홈페이지(운항정보)
814	울산광역시_북구	가을꽃 전시회	870		항공물류정보시스템
815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공시	871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2.0)
816		북구 청소년 예술제	872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2.0)
817		이동비만예방 교육프로그램	873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2.0)
818		오도밸리복지센터	874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2.0)
819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875	인천환경공단	사업소별 수질현황
820		추억의 학교 홈페이지	876	재단법인 국악방송	방송용 국악음원 데이터베이스
821		평생교육센터	877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전문도서관
822		관광개발	87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823		관광명소	879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청 홈페이지DB
824	관광정보	880	전라남도(본청)	남도여행길잡이 관광문화콘텐츠	
825	여행흔적	881		실감나는 바다세상	
826	웅기마을안내	882	전라남도_강진군	강진아트홀	
827	웅기문화관	883		문화관광	
828	웅기아카데미	884	전라남도_광양시	광양시의회 DB	
829	울주RCE 홈페이지	885	전라남도_구례군	매천도서관	
830	울주축제	886		문화관광	
831	주변관광	887		생명체험학교	
832	테마여행	888	전라남도_나주시	대표홈페이지	
833	울산광역시_중구	성안옛길	889	전라남도_담양군	한국가사문학DB
834		시설공사 알리미	890		한국가사문학DB
835		자적거 홈페이지	891	전라남도_무안군	관광문화
836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892	무안군 농축산업 정보		
837		893		무안군 체험마을	
838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행사정보	894	전라남도_보성군	상세통계연보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839	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통계(5대범죄)	895	전라남도_순천시	관광순천 홈페이지 DB
840		울산경찰통계(총포소지)	896		순천숲에ON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897	전라남도_순천시	숲체험	95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898		시민공영 자전거	954	제주특별자치도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899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955		사이버삼다관
900	전라남도_신안군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956	제주특별자치도_제주시	세계자연유산홈페이지
901		해수욕장 현황	957	제주특별자치도_제주시	탐라순력도
902	전라남도_여수시	거북선사이버해전 체험관	958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903	전라남도_영광군	영광군 자치법규	959		중앙119구조단
904		영광군지	960	중앙119교육원	중앙119홈페이지
905	전라남도_완도군	관광문화	9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 DB
906	전라남도_장성군	장성군사	96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907	전라남도_진도군	관광문화	96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통계 DB
908		디지털진도문화대전	964		환경분쟁신청사건진행현황
909	전라남도_함평군	문화관광	965	지식경제부	e-Nego정보
910	전라남도_해남군	직거래장터(구인/구직)	966		기업지원플러스
911		직거래장터(부동산거래)	967		법령정보
912		직거래장터(중고매매)	968		위해상품판정 정보
913		직거래장터(홍보)	969		전자무역문서서식정보
914	전라북도(본청)	한국전통소리문화	970		지식경제 통계포털
915	전라북도_고창군	문화관광DB	971		지식경제부 디지털도서관MKEIS
916	전라북도_군산시	경제산업정보	972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917		군산시 문화관광정보	97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신고시스템
918		근대사 문헌 및 논문, 근대군산사진자료	974		국립검역통계 DB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919		시립도서관(도서관리데이터베이스)	975	체육인재 육성재단	스포츠커리어- 체육관련 채용정보
920		온라인홍보포털	976	최저임금 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921	전라북도_ 김제시	김제시 시민정보화 교육	977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	경영공시
922		김제시 여성회관	978		축산물HACCP교육
923		김제시 지평선 축제	979		축산물HACCP인증
924	전라북도_ 남원시	시의회 회의록	980		축산물위생검사
925	전라북도_ 무주군	농촌체험관광 (http://stay.muju.go.kr)	981	축산물품질 평가원	축산물 품질평가원/축산물 가격정 보/축산물 등급판정 통계DB
926		도서관목록(도서프로그램)	982		축산물 품질평가원-축산물 가격정 보-돈육대표가격 정보
927		문화관광(http://tour.muju.go.kr)	983		축산물품질 평가원/축산물 가격정 보/축산물 경매시황 증계정보
928		반디불사이버장터 (http://mj1614.com)	984		축산물품질 평가원/축산물가격정 보/축산물 도매시장 일일 경락 가 격정보
929		예체문화관 (http://yechae.muju.go.kr)	985		충남대학교 도서관
930	전라북도_ 완주군	관광사진갤러리	986	충남대학교 병원	의사진료안내정보
931		문화관광	987	충남지방 경찰청	충남청 홈페이지
932	전라북도_ 장수군	문화관광	988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933	전라북도_ 전주시	공연행사체험 및 문화시설 정보 한옥마을 맛집	989	충청남도 (본청)	농산물이력추적관리
934		공영주차장 정보	990		백제역사문화3D
935		공원정보	991		충남관광 홈페이지 관광지 정보
936		공중화장실 정보	992		충남넷 홈페이지
937		교통정보	993	충청남도_ 계룡시	문화관광
938		전주시 구인/구직 정보	994		지식관리
939		체육시설정보	995		지역경제정보
940	전라북도_ 정읍시	구과 백정기의사 기념관	996	충청남도_ 논산시	강우량정보
941		동학농민혁명	997		논산시 3D 생활지리정보
942		문화관광	998		논산시 통계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943	전라북도_진안군	진안군홈페이지	999		논산시의회 회의록
944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1000		문화재
945	전쟁기념사업회	유물정보	1001		통계연보
946		전사자 정보 검색	1002	충청남도_당진시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관리
947		전쟁군사정보 검색	1003		사진자료 관리
948		IT통계정보	1004		세외수입관리
94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베디드SW사업정보	1005	충청남도_보령시	건물명
950		전자정보통신 연구자료 DB	1006		보령시-문화관광홈페이지
951		전자정보통신DB	1007		보령인터넷방송영상콘텐츠
952	제주관광공사	관광 콘텐츠	1008		비바보령 아카데미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009	충청남도_보령시	회의록	1065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1010	충청남도_부여군	농업기술센터 (buyeonongup.go.kr)	1066		통계지리정보서비스
1011		문화관광정보(buyecotour.net)	1067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자료마당
1012	충청남도_서산시	문화관광	1068	통일연구원	통일 북한관련 학술정보
1013		물가정보	1069	특수법인	어항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1014		통계정보	1070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청소선 운영시스템
1015		게시판	1071	특허청	특허정보 DB
1016	충청남도_아산시	교통정보	107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인
1017		맛집/숙박	1073	한국개발연구원	발간물DB
1018		멀티미디어	1074	한국건설관리공사	홈페이지
1019		민원서식	107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정보DB
1020		블로그	1076		사회기반시설연구정보DB
1021		아산시뉴스	1077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총서
1022		연계사이트	1078		한국문집총간DB
1023		웹페이지	107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발간자료
1024		이미지	108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자료DB
1025		자치법규	1081		연구자 발표자료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026		지리정보시스템	1082		전문분야 연구자검색	
1027		직원정보	1083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KISTII 보유 특허 및 이전대상 기 술 정보	
1028		통합예약목록정보	1084		과학기술동향정보 및 유망기술정 보(미리안)	
1029	충청남도_ 연기군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1085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1030		사이버홍보관	1086		디지털 코리아 (Digital Korean)	
1031		연기군의회홈페이지	1087	해외학술정보KnowledgeBase (e-Gate KB)		
1032		연기군포털홈페이지	1088	한국과학창 의재단	창의체험 프로그램	
1033	충청남도_ 청양군	공공체육시설	1089		창의체험 자원	
1034		명품고추홈페이지	1090	한국관광 공사	국내관광정보	
1035		문화관광	1091	한국광물 자원공사	광물가격정보	
1036		보건소	1092	한국교육 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1037		정산 도서관	1093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DB	
1038		청양고추문화마을	1094	한국교통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발간물	
1039		칠갑산 자유휴양림	1095	한국국제 교류재단	Koreana 기사원고	
1040		고객지원	1096		Koreanists	
1041	공고/소식	1097	해외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현황			
1042	충청남도 개발공사	공사소개	1098	한국국학 진흥원	조선시대 일기류 기록자료 DB 구 축(DBID 420)	
1043		사업현황	1099		교수공개채용	
1044	충청북도_ 괴산군	괴산군대표홈페이지 관광정보	1100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교원인사	
1045	충청북도_ 옥천군	옥천 군민도서관 자료 DB	1101		교원포상	
1046		옥천 축제	1102		보유장비 DB	
1047		옥천군 문화관광정보	1103		연간교육일정	
1048	충청북도_ 제천시	의회회의록	1104		연수실적 DB	
1049	제천시	통계자료	1105		입학 성적 관련 DB	
1050	충청북도_ 증평군	문화관광	1106		입학관련 DB	
1051	증평군	좌구산휴양림	1107		전임교원 연구업적	
1052	충청북도_ 진천군	개별공시지가 산정자료	1108			특허관련 DB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053		생거관화미술관 전시내용DB	110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기기분석지원-첨단기기목록
1054	충청북도_청원군	도시기준점관리시스템	1110	한국남동발전(주)	Bid information
1055		문화관광홈페이지	1111		KEPCO SRM
1056		청원생명축제	11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57	충청북도_청주시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1113		기재부 경영영정보 공개 시스템
1058	충청북도_청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	1114		경영공시자료
1059		문화관광	1115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
1060		외국어홈페이지	1116		노동패널
1061	케이워터	1117	사업체패널		
1062	코레일테크(주)	1118	연구보고서DB		
1063	통계청	국가통계통합DB(ETLDB)	1119		정기간행물
1064		영문홈페이지 “국제협력”	11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새누리시스템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121	한국농수산대학	대표홈페이지	117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물
1122		산학협력단홈페이지	11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모집정보
1123		전자도서관	117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GT Online
11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정보	1180		KIAT 홈페이지
1125		농수산물거래알선정보	1181		녹색인증
1126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1182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1127		화훼경매시세정보(yfmc)	1183	산업기술인력정보센터	
1128	한국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현황	1184	산업기술종합서비스(ITTS)	
1129		농어촌지하수 관측정보	1185	소재정보은행	
1130		농어촌지하수정보	1186	테크포스넷(Tech-Force Net)	
1131		해외농업진출현황	1187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1132	해외농업환경조사 보고서	1188	국가산단 생태산업단지 정보		
1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제연구정보 포털	1189		전국산업단지 기본정보
1134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	1190		전국산업단지 분양및처분
1135		연구원 홈페이지	1191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1136		오아시스	1192	전국클러스터사업정보	
113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고시센터 -대학알리미	1193		지역투자정보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138	한국디자인 진흥원	이미지DB	1194	한국산업 인력공단	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 소식공간)	
1139	한국무선 인터넷산업 연합회	Winc 등록정보	1195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1140	한국문학 번역원	KLTI 번역출간도서 DB	1196		해외채용정보 해외연수정보 및 각 종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정보	
1141		KLTI 작가DB	1197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소장도서DB	
1142	저작권수출활성화DB	1198	연구성과DB			
1143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관광자원정보	1199		기술장비	
1144		관광통계정보	1200		논문 학회 발표자료	
114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간물	1201		연구보고서	
1146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경영공시	1202		연구인력정보	
1147		공지사항	1203		지식재산권	
1148		문화예술교육자료	1204	한국석유 공사	국내유가정보	
1149		사업내용	1205	한국석유 관리원	석유관리원 통합관리시스템	
1150		웹진기사자료	1206		의뢰시험 시스템	
1151		지원사업공고	1207	한국세라믹	시험분석장비정보	
1152		진흥원발간자료	1208	기술원	홈페이지정보	
1153		행사소식	1209	한국소방	소방용품 승인정보	
1154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문학자료 멀티미디어 DB	1210	산업기술원	소방용품 제품검사결과
1155			문학작품 및 작가 DB(작가정보)	1211	한국수산 자원관리 공단	GIS
1156	문학작품 및 작가 DB(작품정보)		1212	홈페이지		
1157	우수문학 선정 정보		1213	한국승강기	승강기이력	
1158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회원기관DB	1214	안전기술원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현황	
1159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문화유산 정보자료실	1215	한국시설 안전공단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1160	한국문화정보센 터	문화 UCC	1216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1161		문화체육관광 승인통계	121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1162		예술로(문화예술DB)	1218		한국시설안전공단(결합사례)	
1163		한국전통문양 원형DB	1219		한국시설안전공단(관련법령)	
1164	한국발명 진흥회	발명진흥정보	1220		한국시설안전공단(기술개발)	
1165	한국방송통신전 파진흥원	모바일테스트 기술 DB	1221		한국시설안전공단(내진설계 및 보 강방법)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166		방송통신 자격검정 시험장	1222		한국시설안전공단(내진설계기준)
1167		방송통신 자격검정 통계 정보	1223		한국시설안전공단(보수보강사례)
1168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224		한국시설안전공단(사고사례)
1169		방송통신전파진흥원-기금정보	1225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진단기법)
1170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자산운용가	1226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취약요소)
1171		투자관리시스템	1227		한국시설안전공단(주요장비 현황)
1172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1228		한국시설안전공단(주요장비의 용도 및 특징)
117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정보	1229		한국시설안전공단(지진관련용어)
1174		보건사업기술이전센터 보유 기술	1230		한국시설안전공단(지진일반)
1175		보건의료통계	1231		한국시설안전공단(지진피해사례)
1176		수출입정보	1232		한국시설안전공단(진단장비 보유 현황)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1233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1289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모니터링
1234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DB	1290		천문우주지식DB
1235		성과맞고서DB	1291		한국철도공사
1236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1292		글로벌코레일어플
1237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 DB	1293		코레일 홈페이지
1238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이터닝 콘텐츠	129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보고서DB
1239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전시	1295		철도표준규격DB
1240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종합 정보	129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4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교수학습 DB	129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1242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간행물	1298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백서
1243		바로바로원전기술지원센터	1299		연구보고서
124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300		콘텐츠산업통계정보
1245	한국인터넷진흥원	KiCERT/보호나라 홈페이지 DB	1301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의계약대상토지
1246		방송통신 해외진출 DB	1302		연간토지분양계획
1247		인터넷주소자원 및 인터넷이용통계	13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 록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248		인터넷지식포털 netsqure	1304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고문헌)
1249	한국장애인 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BF인증정보	1305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인물)
1250		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홈페이지	1306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지역정보)
1251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생산 품인증정보	1307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1252		UCI 통합DB	1308	한국한의학 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고전명저총 서DB
125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정보DB	1309	한국항공	논문
1254		위원회 홈페이지	1310	우주연구원	단행본/학술지
1255		자유이용저작물 권리관리 정보	1311		연구보고서
1256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등록DB	1312	한국해양 과학기술 진흥원	홈페이지 정보
1257		저작권 자동상담사이트DB	1313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양수산개발원 발간물
1258		저작권교실 DB	1314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발간물
1259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315	한국환경 공단	국가대기오염정보
1260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1316		사전예방규정 준수정보
1261		한국전기 안전공사	전기안전포탈시스템		1317
1262	홈페이지		1318		상하수도 통계 DB
1263	한국전력 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	1319	수도권대기환경청-배출권전자거래 시스템	
1264		전력통계정보	1320	전자관리표 제출현황	
1265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ETRI 기술이전홈페이지	1321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1266		다국어 음성언어 DB	1322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1267		다국어 음성언어DB	1323	항로표지 기술협회	입찰/채용등 공지사항
1268		도서 프로시딩 보고서 동향정 보(IT동향 IT통계 경제동향) 잡 지 논문(소장논문 ETRI논문)	1324	항로표지 기술협회	항로표지정보
1269		스마트 모바일용 다국어 언어 음성 DB	1325	해양안전 심판원	해양안전사고정보
1270		입찰정보	1326	해양자연사 박물관	해양정보DB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번호	보유기관명	DB명
1271	한국정보화 진흥원	Giga인터넷도입추진계획	1327	해외문화 홍보원	기관 국내외 활동 정보
1272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 정보 마당 및 알람마당 정보	1328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
1273		표준프레임워크SW	1329		도로명주소 안내도 DB
1274		홈페이지내 교육자료 및 공지 사항 자료실	1330		민원안내정보(XML)
1275	한국정책	1331	생활공감지도 포털		
1276	방송원	1332	재정고		
1277	한국중부 발전(주)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1333		
1278	한국지역 난방공사	기관홈페이지	1334	헌법재판소	발간문헌정보
1279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트위터	1335		판례정보
128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페이스북	1336	환경부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1281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문헌정보DB	1337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
1282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공인민간자격현황	1338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
1283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1339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1284		대학특성화정보	1340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1285		민간자격현황	1341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1286		직업정보-직업사전	1342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287		진로상담-상담사례	1343		환경영향평가정보
1288		학교 및 학과정보 - 학과사전	1344		환경통계정보